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29호

2017. 9. 28.(목)

함께
서울



목 차

◆자치법규

[규 칙]

제4183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3
--	---

◆고 시

제2017-342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
제2017-344호 장충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
제2017-345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7
제2017-346호 도시관리계획(구의동 587-64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
제2017-347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고시	26
제2017-348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278-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0
제2017-34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강남구 논현동 202-7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7
제2017-35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4
제2017-351호 여의천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	52
제2017-352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63
제2017-353호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관악구 신림동 75-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	78
제2017-354호 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88

◆공 고

제2017-2054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공고	96
제2017-205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97
제2017-20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	99
제2017-2067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101
제2017-206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01
제2017-2072호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안) 열람공고	103
제2017-2075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104
제2017-2076호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공고	104

제2017-2077호 서울특별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공고	105
제2017-2078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105
제2017-2083호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06

◆ 구 고 시

제2017-121호 도시계획시설(철도:용산민자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용산구)	107
제2017-1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북구)	108
제2017-7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113
제2017-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동작구)	123
제2017-122호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서초구)	126
제2017-124호 도시계획시설(말죽거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서초구)	131

◆ 구 공 고

제2017-8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중랑구)	133
제2017-984호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도봉구)	135
제2017-79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노원구)	136
제2017-802호 도시계획시설(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노원구)	136
제2017-80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노원구)	140
제2017-12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강동구)	141

◆ 사업소고시

제2017-19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43
------------------------------------	-----

◆ 기 타

제2017-196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44
제2017-197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44
제2017-198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45
제2017-199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45

자 치 법 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183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7. 공원편의시설(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원편의시설(주차장)

구 분	기준 및 이용료			이용시간	비 고
주차요금	1회주차(1구획)		1일주차 최고한도	월정기권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여의도 한강공원	최초30분 2,000원	300원	15,000원	여의도샛강쪽 80,000원 한강본류호안쪽 100,000원	*4월~10월 : 오전9시 ~오후11시 *11월~다음해 3월 : 오전9시 ~ 오후9시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은 이용 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 터 16일까지)은 이용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광나루·잠실·뚝섬·잠 원·반포·이촌·양화·망 원·난지·강서한강공 원	최초30분 1,000원	200원	10,000원	50,000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한강공원 주차장의 시민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명절 기간(3일간) 무료 개방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강공원주차장의 명절기간 주차요금 징수 규정 개정

-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표 중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14일부터 16일까지)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내용을 추가함.(안 별 표1, 7호)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2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강서구 지역주민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문화시설	문화시설	강서구 화곡1동 379-68 일대	-	증)1,246.2	1,246.2	-	

- 건축범위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50% 이하	250% 이하	7층 이하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1) 및 강서구 도시계획과(☎ 2600-6387)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4호

장충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 1. 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18호(2016. 12. 29)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장충동2가 197번지 일원 장충단근린공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장충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장충단공원 경로당의 지하층 공간의 전시실로의 변경 및 국립중앙극장의 건축물 대장과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의 상이한 건축 연면적을 현황에 맞도록 정정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7번지 일대

3. 면 적 : 289,209㎡

4.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8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3783-5966)

장충단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7번지 일원)

구	본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289,209.00	98,928.08	15	18,939.73	51,302.01	87	289,209.00	98,928.08	15	18,939.73	49,532.06	87	전시설(증) 73.60㎡ 국립극장(감) 1,843.55㎡ 정정 및 명칭변경						
	소 계	37,230.18	27,470.18				11	37,230.18	27,470.18				11							
	도 로	30,642.30	20,882.30 (9,760.00)				(11)	30,642.30	20,882.30 (9,760.00)				(11)							
	광 장	6,587.88	6,587.88					6,587.88	6,587.88											
조 경 시 설		5,428.79	5,428.79				10	5,428.79	5,428.79				10							
	유 희 시 설	201.00	201.00				7	201.00	201.00				7							
휴 양 시 설		1,935.21	1,935.21	2	222.52	434.76	15	1,935.21	1,935.21	2	222.52	340.20	15	경로당(감) 94.56㎡						
	교 양 시 설	21,283.14	21,283.14	3	11,421.91	37,099.11	8	21,283.14	21,283.14	3	11,421.91	34,831.80	8	전시설(증)168.16㎡ 국립극장면적정정(감) 2,435.47㎡ 2개시설 명칭변경						
운 동 시 설		31,757.94	31,757.94	4	6,091.74	12,489.76	36	31,757.94	31,757.94	4	6,091.74	12,489.76	36							
	편 의 시 설	8,959.54	8,959.54	5	479.59	511.44		8,959.54	8,959.54	5	479.59	511.44		명칭변경 (목외화장실)						
관 리 시 설		1,892.28	1,892.28	1	723.97	766.94		1,892.28	1,892.28	1	723.97	1,358.86		면적정정(증) 591.92㎡ 명칭변경 (국립극장기계동)						
	누 지 및 기타	180,520.92						180,520.92												
시 설 율 (법정 40%)		(98,928.08 / 289,209.00) × 100 = 34.21%																		
건 폐 율 (법정 10%)		(18,939.73 / 289,209.00) × 100 = 6.55%																		

2.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289,209.00	98,928.08		15	18,939.73	51,302.01	84			289,209.00	98,928.08		15	18,939.73	49,532.06	87	전시실(증) 73.60㎡ 국립극장(감) 1,843.55㎡ 면적 및 명칭변경
	소 계		37,230.18	27,470.18					11			37,230.18	27,470.18					11	
	도 로		30,642.30	20,882.30 (9,760.00)					(11)			30,642.30	20,882.30 (9,760.00)					(11)	
		가		6,587.88	6,587.88						가		6,587.88	6,587.88					
광 장	가-1	중구 장충동 2가 197	(520.61)	(520.61)						가-1	중구 장충동 2가 197	(520.61)	(520.61)						
	가-2	중구 장충동 2가 197	(707.37)	(707.37)						가-2	중구 장충동 2가 197	(707.37)	(707.37)						
	가-3	중구 장충동 2가 197	(258.07)	(258.07)						가-3	중구 장충동 2가 197	(258.07)	(258.07)						
	가-4	중구 장충동 2가 197	(821.00)	(821.00)						가-4	중구 장충동 2가 197	(821.00)	(821.00)						
	가-5	중구 장충동 2가 신4-67	(4,280.83)	(4,280.83)						가-5	중구 장충동 2가 신4-67	(4,280.83)	(4,280.83)						
	소 계		5,428.79	5,428.79					10			5,428.79	5,428.79					10	
계류	바		3,147.61	3,147.61					(8)	바		3,147.61	3,147.61					(8)	
	바-1	중구 장충동 2가 신6-5	(588.49)	(588.49)					(1)	바-1	중구 장충동 2가 신6-5	(588.49)	(588.49)					(1)	
	바-2	중구 장충동 2가 신6-5	(650.71)	(650.71)						바-2	중구 장충동 2가 신6-5	(650.71)	(650.71)						
	바-3		(862.37)	(862.37)					(1)	바-3		(862.37)	(862.37)					(1)	
	바-4	중구 장충동 2가 신6-5	(309.20)	(309.20)					(4)	바-4	중구 장충동 2가 신6-5	(309.20)	(309.20)					(4)	
	바-5	중구 장충동 2가 신6-5	(77.47)	(77.47)					(2)	바-5	중구 장충동 2가 신6-5	(77.47)	(77.47)					(2)	
	바-6		(550.32)	(550.32)						바-6		(550.32)	(550.32)						
	바-7		(109.05)	(109.05)						바-7		(109.05)	(109.05)						

구 분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경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후			비 고
					면적	면적	공작물 (기)							바닥면적	면적	공작물 (기)	
조 경 시 설	생태습지	사	중구 장충동 2가 산6-5외 3필지	2,133.33	2,133.33		(2)	사	중구 장충동 2가 산6-5외 3필지	2,133.33	2,133.33					(2)	
		⑨	중구 장충동 2가 산6-5외 3필지	(435.00)	(435.00)		(1)	⑨	중구 장충동 2가 산6-5외 3필지	(435.00)	(435.00)					(1)	
	인공식 개천	카	중구 장충동 2가 산14-2외 3필지	50	50		(1)	카	중구 장충동 2가 산14-2외 3필지	50	50					(1)	
		하	중구 장충동 2가 산6-5외 3필지	97.85	97.85			하	중구 장충동 2가 산6-5외 3필지	97.85	97.85						
유 회 시 설	소 계			201.00	201.00		4			201.00	201.00					4	
	숲속놀이터	타	중구 장충동 2가 197	201.00	201.00		(4)	타	중구 장충동 2가 197	201.00	201.00					(4)	
휴 양 시 설	소 계			1,935.21	1,935.21	222.52	434.76			1,935.21	1,935.21		2	222.52	340.20	15	
	휴게소	다		1,935.21	1,935.21		434.76	다		1,935.21	1,935.21		2	222.52	340.20	15	
	경포당	다-1	중구 장충동 2가 197	(750.00)	(750.00)	철근 콘크리트조	(213.52)	다-1	중구 장충동 2가 197	(750.00)	(750.00)	철근 콘크리트조	(1)	(213.52)	(331.20)		경포당(감) 94.56㎡
	휴게소-1	다-2	중구 장충동 2가 197	(31.50)	(31.50)		(9.00)	다-2	중구 장충동 2가 197	(31.50)	(31.50)		(1)	(9.00)	(9.00)		
	휴게소-2	다-3	중구 장충동 2가 산14-6외 3필지	(1,068.97)	(1,068.97)			다-3	중구 장충동 2가 산14-6외 3필지	(1,068.97)	(1,068.97)					(12)	
	휴게소-3	다-4	중구 장충동 2가 산14-6외 3필지	(84.74)	(84.74)			다-4	중구 장충동 2가 산14-6외 3필지	(84.74)	(84.74)					(3)	

구 분	변 경			진 경			변 경			후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소 계			21,283.14	21,283.14		3	11,421.91	37,099.11	8					3	11,421.91	34,831.80	8	전시실(중) 168.16㎡ 국립극장(강) 2,435.47㎡ 정점 및 명칭변경	
	국립극장	4	중구 장충동 2가 신14-67	12,914.26	12,914.26	철근 콘크리트조	1	9,579.64	33,804.50		4	중구 장충동 2가 신14-67	12,914.26	12,914.26	철근 콘크리트조	1	9,657.64	31,369.03	면적정정(강) 2,435.47㎡
	별오름 극장	5	중구 장충동 2가 신14-67	3,155.97	3,155.97	철근 콘크리트조	1	942.15	1,893.53		5	중구 장충동 2가 신14-67	3,155.97	3,155.97	철근 콘크리트조	1	942.15	1,893.53	명칭변경 (별관동)
	하늘극장	6	중구 장충동 2가 신14-67	1,183.39	1,183.39	철근 콘크리트조	1	822.12	1,401.08		6	중구 장충동 2가 신14-67	1,183.39	1,183.39	철근 콘크리트조	1	822.12	1,401.08	명칭변경 (KB정소년 하늘극장)
	문화행 사대당	아	중구 장충동 2가 197	572.15	572.15					아	중구 장충동 2가 197	572.15	572.15						
	전시장		중구 장충동 2가 197			철근 콘크리트조	1				중구 장충동 2가 197			철근 콘크리트조	1	(188.16)	168.16	연면적(중) 168.16㎡ 필요터 신설	
	등상 기념비	자		3,457.37	3,457.37				(8)	자		3,457.37	3,457.37				(8)		
	사명대 사상	자-1	중구 장충동 2가 197-28	(305.00)	(305.00)				(1)	자-1	중구 장충동 2가 197-28	(305.00)	(305.00)				(1)		
교 양 시 설	장충단비	자-2	중구 장충동 2가 197	(16.00)	(16.00)				(1)	자-2	중구 장충동 2가 197	(16.00)	(16.00)				(1)		
	파리장 서비	자-3	중구 장충동 2가 7-27	(270.00)	(270.00)				(1)	자-3	중구 장충동 2가 7-27	(270.00)	(270.00)				(1)		
	이준열 사상	자-4	중구 장충동 2가 197	(345.00)	(345.00)				(1)	자-4	중구 장충동 2가 197	(345.00)	(345.00)				(1)		
	최현배 기념비	자-5	중구 장충동 2가 신7-24	(1,000.00)	(1,000.00)				(1)	자-5	중구 장충동 2가 신7-24	(1,000.00)	(1,000.00)				(1)		
	유관순상	자-6	중구 장충동 2가 신6-1	(390.95)	(390.95)				(1)	자-6	중구 장충동 2가 신6-1	(390.95)	(390.95)				(1)		
	3·1 기념탑	자-7	중구 장충동 2가 신14-81	(860.42)	(860.42)				(1)	자-7	중구 장충동 2가 신14-81	(860.42)	(860.42)				(1)		
	김용환상	자-8	중구 장충동 2가 신14-21	(270.00)	(270.00)				(1)	자-8	중구 장충동 2가 신14-21	(270.00)	(270.00)				(1)		

교 양 시 설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기)			
안녕시설	소계			31,757.94	31,757.94	4	6,091.74	12,489.76	36					4	6,091.74	12,489.76	36		
	운동공간	라		30,356.35	30,356.35	3	6,057.79	12,421.86		라				3	6,057.79	12,421.86			
	장충체육관	라-1	중구 장충동 2가 200-12	(9,142.82)	(9,142.82)	철근 콘크리트조	(1)	(5,464.01)	(11,423.00)		라-1	중구 장충동 2가 200-12	(9,142.82)	(9,142.82)	철근 콘크리트조	(1)	(5,464.01)	(11,429.00)	
	장충수영장	라-2	중구 장충동 2가 산7-22	(5,697.00)	(5,697.00)	철근 콘크리트조	(1)	(459.90)	(858.98)		라-2	중구 장충동 2가 산7-22	(5,697.00)	(5,697.00)	철근 콘크리트조	(1)	(459.90)	(858.98)	
	동국대운동장	라-3	중구 장충동 2가 산7-22	(14,500.00)	(14,500.00)						라-3	중구 장충동 2가 산7-22	(14,500.00)	(14,500.00)					
체력단련장	석호정	라-4	중구 장충동 2가 산14-21	(1,016.53)	(1,016.53)	철근 콘크리트조	(1)	(133.88)	(133.88)		라-4	중구 장충동 2가 산14-21	(1,016.53)	(1,016.53)	철근 콘크리트조	(1)	(133.88)	(133.88)	
		마		1,401.59	1,401.59		1	33.95	67.90	(36)	마		1,401.59	1,401.59		1	33.95	67.90	(36)
		마-1	중구 장충동 2가 197	(62.19)	(62.19)						마-1	중구 장충동 2가 197	(62.19)	(62.19)					
		마-2	중구 장충동 2가 197	(33.75)	(33.75)						마-2	중구 장충동 2가 197	(33.75)	(33.75)					
		마-3	중구 장충동 2가 산7-22	(500.00)	(500.00)				(17)		마-3	중구 장충동 2가 산7-22	(500.00)	(500.00)				(17)	
편의시설		마-5	중구 장충동 2가 산14-21	(805.65)	(805.65)	연외조	(1)	(33.95)	(67.90)	(19)	마-5	중구 장충동 2가 산14-21	(805.65)	(805.65)	연외조	(1)	(33.95)	(67.90)	(19)
	소계			8,959.54	8,959.54		5	494.14	539.23				8,959.54	8,959.54		5	494.14	539.23	
		2		504.17	504.17		5	494.14	539.23		2		504.17	504.17		5	494.14	539.23	
	시민휴게시설	2-1	중구 장충동 2가 197	(243.00)	(243.00)		(1)	(243.00)	(243.00)		2-1	중구 장충동 2가 197	(243.00)	(243.00)		(1)	(243.00)	(243.00)	
	화장실	2-2	중구 장충동 2가 산14-67	(62.00)	(62.00)	철근콘크리트조	(1)	(47.45)	(34.21)		2-2	중구 장충동 2가 산14-67	(62.00)	(62.00)	철근콘크리트조	(1)	(47.45)	(34.21)	면치반경 (옥외화장실)

구 분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경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경		구 조	규모	후		비 고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주 차 장	2-3	중구 장충동 2가 신14-21	(65.88)	(65.88)	(65.88)		2-3	중구 장충동 2가 신14-21	(65.88)	(65.88)	(65.88)		철근콘크리 트조	(1)	(65.88)	(65.88)	
	2-4	중구 장충동 2가 신14-21	(67.57)	(67.57)	(82.36)		2-4	중구 장충동 2가 신14-21	(67.57)	(67.57)	(67.57)		철근콘크리 트조	(1)	(67.57)	(82.36)	
	2-5	중구 장충동 2가 200-102	(65.72)	(65.72)	(85.99)		2-5	중구 장충동 2가 200-102	(65.72)	(65.72)	(65.72)		연외조	(1)	(55.69)	(85.99)	
	나		8,353.52	8,353.52			나		8,353.52	8,353.52							
	나-1	중구 장충동 2가 200-102	(471.74)	(471.74)			나-1	중구 장충동 2가 200-102	(471.74)	(471.74)							
주 차 장	나-2	중구 장충동 2가 196-1 외 1필지	(260.00)	(260.00)			나-2	중구 장충동 2가 196-1 외 1필지	(260.00)	(260.00)							
	나-3	중구 장충동 2가 신14-67	(4,987.84)	(4,987.84)			나-3	중구 장충동 2가 신14-67	(4,987.84)	(4,987.84)							
	나-4	중구 장충동 2가 신14-67	(1,882.94)	(1,882.94)			나-4	중구 장충동 2가 신14-67	(1,882.94)	(1,882.94)							
	나-5	중구 장충동 2가 신14-67	(751.00)	(751.00)			나-5	중구 장충동 2가 신14-67	(751.00)	(751.00)							
	차		101.85	101.85			차		101.85	101.85							
에 스 퀼 레 이 터	차-1	중구 장충동 2가 197	31.30	31.30			차-1	중구 장충동 2가 197	31.30	31.30							
	차-2	중구 장충동 2가 200-101	70.55	70.55			차-2	중구 장충동 2가 200-101	70.55	70.55							
소 계			1,892.28	1,892.28					1,892.28	1,892.28				1	723.97	1,358.86	면적정정(증) 591.92㎡ 명칭변경 (국립극장기계동)
	국립극장 기계동	중구 장충동 2가 신14-67	1,892.28	1,892.28			10	중구 장충동 2가 신14-67	1,892.28	1,892.28			철근콘크리 트조	1	723.97	1,358.86	면적정정(증) 591.92㎡ 명칭변경 (국립극장기계동)
소 계 및 기 타			180,520.92						180,520.92								
	지하철입구 및 독지 및 기타							전지역	180,520.92								

3. 도로조서

- 공원내 도시계획결정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20,882.30				
당초	중로	계				3,929.00				
당초		1	1	25	90.0	2,250.00	부진입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1	2	20	45.0	(9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경계	중로 1-3	
당초		1	3	20	150.0	(3,0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1	4	20	175.0	(3,5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경계		
당초		1	5	20	100.0	(2,0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1	6	14.6	115.0	1,679.00	부진입	중로1-3	공원경계	
당초		3	1	12	30.0	(360.00)	도시계획도로	중로 1-4	공원경계	
		※ 도시계획도로는 부지면적에 산입, 시설면적에는 ()로 표시하여 미 산입시킴으로서 시설물에 미포함.								
당초	소로	계				10,570.00				
당초		1	1	10	115.0	1,150.00	부진입로	중로 1-3	공원경계	
당초		1	2	10	90.0	900.00	부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1	3	8.5	510.0	4,335.00	남부순환로	소로 3-7	공원경계	
당초		1	4	10	175.0	1,750.00				
당초		3	1	5	40.0	200.00	부진입로	중로 1-3	산책로5	
당초		3	2	4	35.0	140.00	부진입로	중로 1-3	산책로6	
당초		3	3	7	75.0	525.00	부진입로	소로 1-2		
당초		3	4	4	60.0	240.00	부진입로	공원경계	남산2호터널관리소	
당초		3	5	7	150.0	1,050.00		주차장5	주차장4	
당초		3	6	4	85.0	340.00		주차장4	주차장5	
당초		3	7	6	165.0	990.00	남산순환로	공원경계	소로 1-3	
당초		3	8	5	20.0	100.00	남산순환로	소로 1-3	공원경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 책 로	계				6,383.30				
당초		-	1	2.3	35.0	80.50	산책로	산책로18	사명대사상	
당초		-	2	4	77.0	308.00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 가-2	
당초		-	3	4	23.0	92.00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2	
당초		-	4	5	76.0	380.00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28	
당초		-	5	4	33.0	132.00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22	
당초		-	6	3	41.0	123.00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19	
당초		-	7	4	126.0	504.00	산책로	산책로20	광장 가-5	
당초		-	8	4	144.0	576.00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5	
당초		-	9	3.7	14.0	51.80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22	
당초	산 책 로	-	10	1.5	24.0	36.00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22	
당초		-	11	2	50.5	101.00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27	
당초		-	12	2	70.0	140.00	산책로	산책로28	광장 가-5	
당초		-	13	7	40.0	280.00	산책로	산책로19	산책로29	
당초		-	14	4	48.5	194.00	산책로	산책로28	광장 가-5	
당초		-	15	1.5	13.0	19.50	산책로	산책로28	산책로31	
당초		-	16	6	14.0	84.00	산책로	산책로29	문화행사마당	
당초		-	17	4.5	9.0	40.50	산책로	이준열사상	광장 가-5	
당초		-	18	1.5	20.0	30.00	산책로	산책로9	학습공간5	
당초		-	19	3	300.0	900.00	산책로	소로 1-1	소로 1-3	
당초		-	20	2.5	10.0	25.00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	21	1	60.0	60.00	산책로	주차장3	운동공간9	
당초		-	22	2.5	94.0	235.00	산책로	중로 1-5	주차장2	
당초		-	23	4	19.0	76.00	산책로	중로 1-5	휴게공간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	29	2.5	76.0	190.00	산책로	중로1-5	휴게공간3	
당초		-	24	2.5	40.0	100.00	산책로	소로 1-3	운동공간11	
당초		-	25	1	10.0	10.00	산책로	체력단련장4	소로 1-3	
당초		-	26	2	10.0	20.00	산책로	체력단련장4	소로 1-3	
당초	산 책 로	-	27	1.5	120.0	180.00	산책로	체력단련장4	휴게소-3	
당초		-	28	4	40.0	160.00	산책로	소3-7	휴게소-3	
당초		-	30	4	107.0	428.00	산책로	소3-2	소 1-1	
당초		-	31	4	70.0	280.00	산책로	소3-2	소 3-1	
당초		-	32	4	110.0	440.00	산책로	소3-1	중 1-2	
당초		-	33	2.5	70.0	107.00	산책로	산책로24	체력단련장5	

조성계획도(변경 전 · 후)

장충단공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전 속 물 (동)	바닥면적 (㎡)	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전 속 물 (동)	바닥면적 (㎡)	면적 (㎡)	공작물 (기)	
계	280,200.00	98,928.08	15	18,939.73	51,302.01	87	280,200.00	98,928.08	15	18,939.73	49,532.06	87	전사면적 73,00㎡ 증설 25,532㎡ 대부분 증설 면적 반영
거반 시설	조 계	37,230.18	27,470.18			11	37,230.18	27,470.18				11	
	도 보	30,642.30	20,882.30 (9,760.00)			(11)	30,642.30	20,882.30 (9,760.00)				(11)	
	광 장	6,587.88	6,587.88				6,587.88	6,587.88					
조 경 시설	5,428.79	5,428.79				10	5,428.79	5,428.79				10	
유 회 시설	201.00	201.00				7	201.00	201.00				7	
휴 양 시설	1,935.21	1,935.21	2	222.52	434.76	15	1,935.21	1,935.21	2	222.52	340.20	15	경로당(증) 54,536㎡
교 양 시설	21,283.14	21,283.14	3	11,421.91	37,099.11	8	21,283.14	21,283.14	3	11,421.91	34,831.80	8	관사당(증) 168,16㎡ 국립중앙박물관(증) 2,430,47㎡ 명품관
운 동 시설	31,757.94	31,757.94	4	6,091.74	12,489.76	36	31,757.94	31,757.94	4	6,091.74	12,489.76	36	
편 익 시설	8,959.54	8,959.54	5	479.59	511.44		8,959.54	8,959.54	5	479.59	511.44		명품관
관 리 시설	1,892.28	1,892.28	1	723.97	766.94		1,892.28	1,892.28	1	723.97	1,358.86		면적증(증) 511,02㎡ 명품관 (국립중앙박물관)
녹지 및 기타	180,520.92						180,520.92						
시 설 률 (면적 40%)	(98,928.08 / 289,209.00) × 100 = 34.21%						(98,928.08 / 289,209.00) × 100 = 34.21%						
건 설 률 (면적 10%)	(18,939.73 / 289,209.00) × 100 = 6.55%						(18,939.73 / 289,209.00) × 100 = 6.5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5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75호(1984.2.14.)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4호(1996.8.10.)로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130-6 일대 예술의전당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1. 변경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4호(1996.8.10.)로 결정(변경)되어 도시계획시설(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을 분리하여 각각의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과 그간 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토지분할, 미지번 면적추가 등으로 토지대장과 상이한 시설면적 오차를 정리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문화시설	문화시설 (예술의전당)	문화시설 (예술의전당)	서초구 서초동 산130-6 일대	서초구 서초동 산 130-6 일대	208,689	감) 562	166,789	1984.2.14. (서고시 제75호)	자연녹지 지역
		문화시설 (국립국악원)		서초구 서초동 740-4 일대			41,338		

2)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문화시설	- 기정 : 문화시설(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 면적 : 208,689㎡ - 변경 : 문화시설(예술의 전당) • 면적 : 166,789㎡ - 변경 : 문화시설(국립국악원) • 면적 : 41,338㎡	- 기 결정되어있는 예술의전당 부지 내 위치한 국립국악원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 - 미부여 지번 3개소 추가(예술의전당) 증) 311㎡ - 토지구획정리 시행에 따른 면적변경(국립국악원) 감) 1,479㎡ - 면적오차 정정(토지대장 기준) 증)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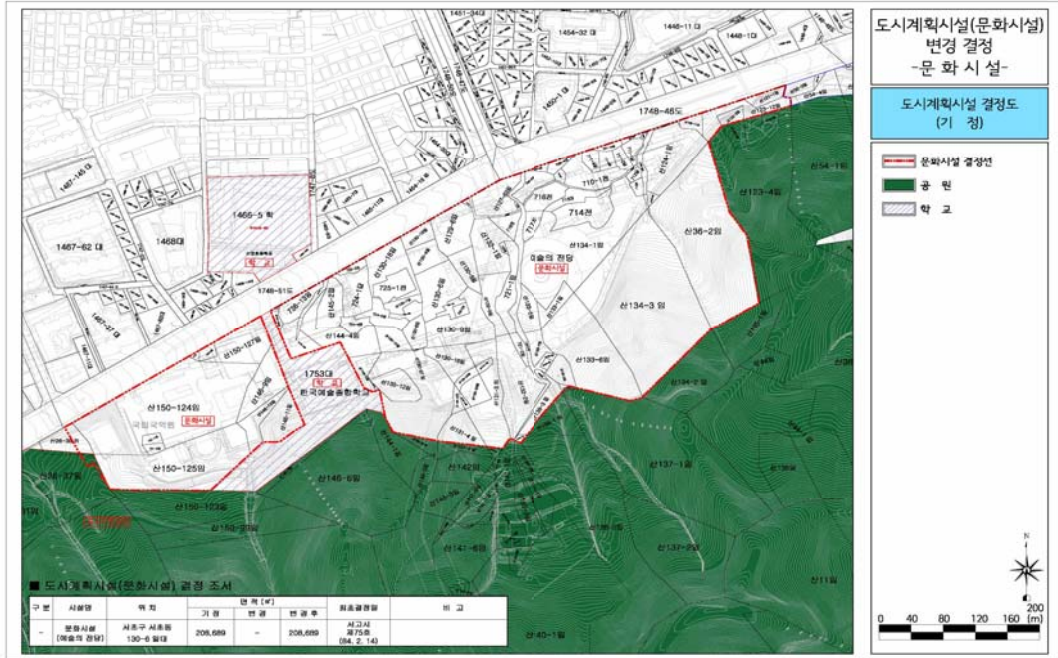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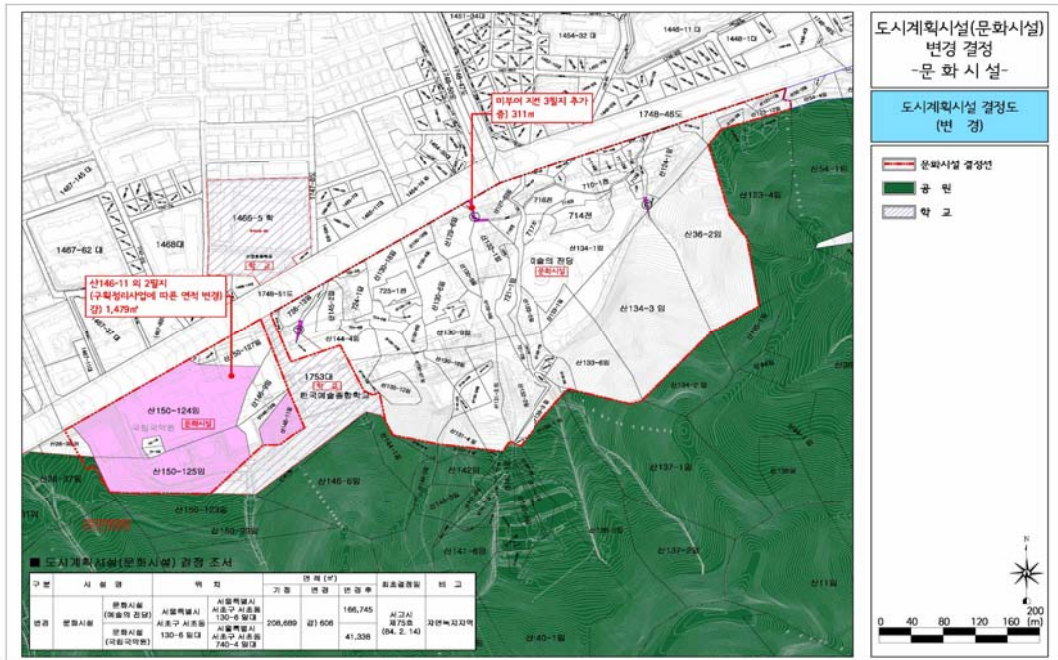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1)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 2155-6785)에
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
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 (기 정)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 (변 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6호
도시관리계획(구의동 587-64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87-64번지 『도시관리계획(구의동 587-64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8.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장

I.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취지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587-64번지
- 면 적 : 659.1㎡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2호선 강변역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II.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광진구 구의동 587-64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587-64번지	-	증)659.1	659.1	단독필지

2. 결정(신설)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면 적(㎡)	변경사유
신설	광진구 구의동 587-64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659.1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신설)코자 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659.1	-	659.1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59.1	감)659.1	-	-	
	준주거지역	-	증)659.1	659.1	100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기본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광진구 구의동 587-64번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59.1	400%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	-	광진구 구의동 587-64번지	659.1	단독개발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용도 계획	지정용도 (1)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구의동 587-64에 한함
	불허용도 (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장례식장	

주1) 지정용도: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오피스텔 제외)

■ 결정(신설)사유서

구 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불허용도 신설	• 청년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고자 구의동 587-64 필지에 한하여 지정용도, 불허용도를 신설함.

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구의동 587-64번지에 한 함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00% 이하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높이	• 7층 이하	• 40m 이하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결정사유
-	• 용적률 변경 - 기본용적률/상한용적률 변경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적용
-	• 높이변경 - 기정 7층이하 → 40m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대상지의 높이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구 분	계획기준	완화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15% 이상 적용	• 기본용적률 400% 부여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제한없음(지상 1층 비주거 설치 의무)	
주 택 건 설 비 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건축물 형 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지속가능형 구조, 커뮤니티 자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공공기 여 방안 및 역사문화 보전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 로 이행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50㎡ 이상 설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준용

※ 커뮤니티 시설은 북카페(51.8㎡이상)로 계획하여야 함.

■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 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 획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00%	용도지역(변경) 부지면적의 15%이상 (98.87㎡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15.01%(98.96㎡)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를 적용하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계획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사항	비 고
건축 한계선	• 구의강변로(20m): 3m, 구의강변로3길(6m): 1m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대상지내 구의강변로(20m) 차량출입 불허	
주차출입구	• 이면부 6m 도로변 주차출입구 설치	

III. 관계도면 : [붙임] (도면계재생략)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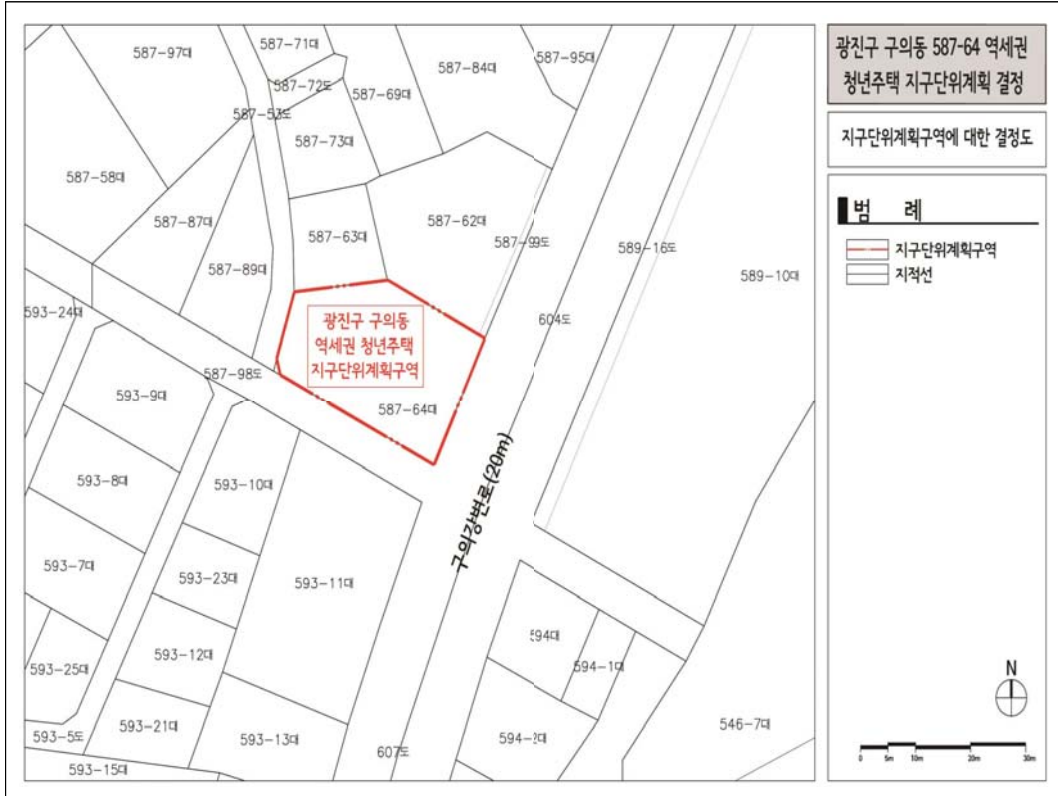
V. 관계서류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36) 및 광진구청 제3별관 5층 도시계획과(02-450-7686)에 비치하고 있음.

VI.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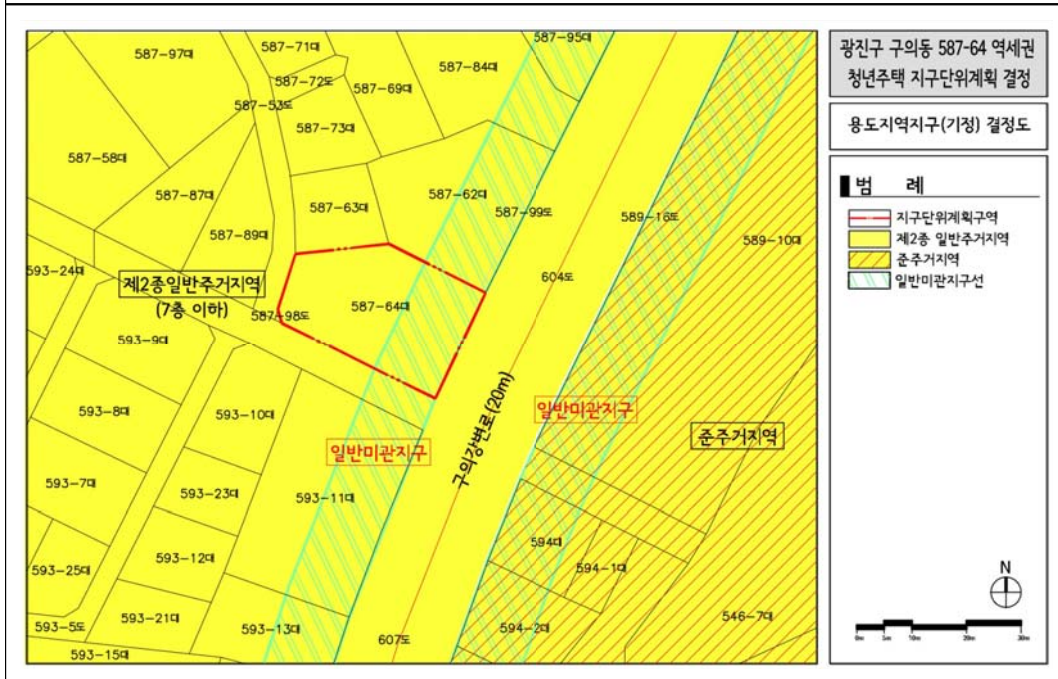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건축허가 전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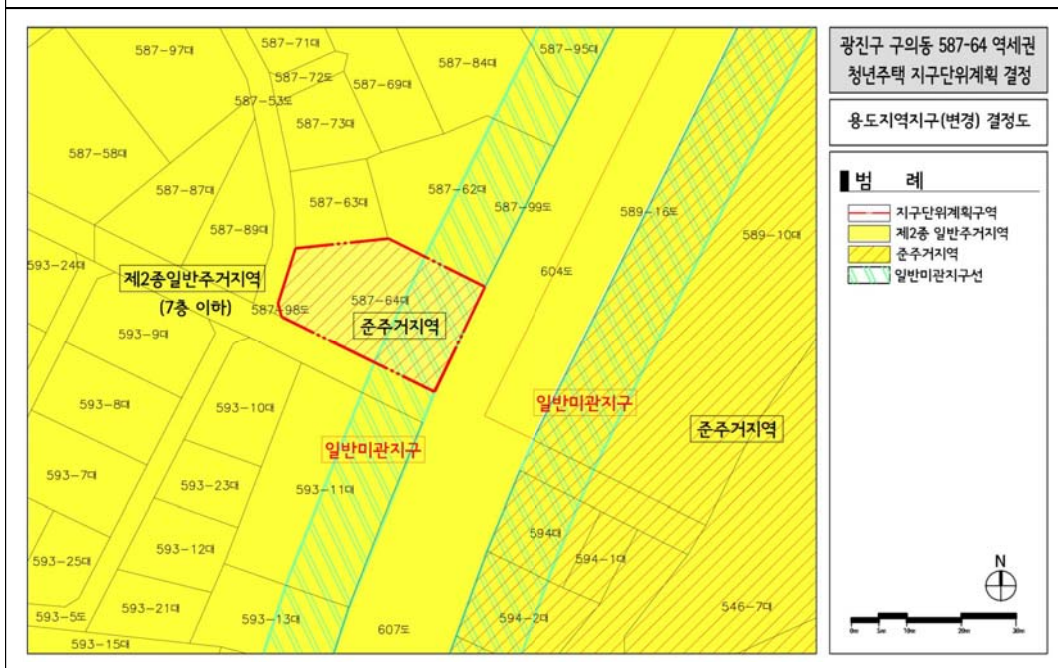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기 정



변 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7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 구역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안에서 자유표시구역(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에 표시·설치되거나 표시·설치하려는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가운데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광고물등에 적용된다.

제3조(기본원칙) 자유표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광고물등의 자율적인 표현을 보장하여 명소화 추구
2. 주변 환경과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경관 보전
3.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공간을 구성

제2장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허가 또는 신고) 자유표시구역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광고물등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5조(허가 또는 신고 절차)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광고물의 허가·신고, 변경 허가·변경신고 또는 기간연장(이하 “허가·신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영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서울특별시시장”으로, “시·군·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시·군·구 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허가·신고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광고물등의 설치·운영·철거·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도시계획·빛공해·교통·소방 등 관련 법령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운영계획 심의 시 검토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자유표시구역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 및 변경 또는 표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 또는 색깔 등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이 빛공해 등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3. 법 제5조(금지광고물) 금지대상 여부
4. 허가 또는 신고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

④ 주관부서는 허가·신고등 신청의 내용이 법 및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위 내용이 빛공해, 도시계획, 건축, 소방, 안전, 도로 등 관련분야의 타 법령과 저촉되는지 여부 및 다른 정책과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뒤, 내부검토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주변의 생활환경이나 경관을 해

치지 않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의한다.

⑥ 시장은 심의 결과가 가결 또는 조건부 가결인 경우 신청인에게 허가(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심의 결과가 부결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민·관합동협의회

제6조(민·관합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자유표시구역에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기구로 건물주, 인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합동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콘텐츠 등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2. 민원 해결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실무협의회의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민·관합동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민관합동협의회는 자유표시구역 자율 관리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광고물등의 설계·시공·운영 및 콘텐츠 관리, 민원처리 등의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4장 광고물등의 표시 및 운영

제8조(표시기간) 자유표시구역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 별표 1의 기간으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청장과 자유표시구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빛방사허용기준) ①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에서 방사되는 빛의 휘도, 조도, 점멸 등이 보행자나 운전자, 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 사업자, 건물주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빛공해분야 전문기관의 사전 모의시험 또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결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금지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에서는 경관보존과 안전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시간) 자유표시구역의 디지털광고물의 운영시간은 일출시부터 02:00까지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행사, 연말연시 등 관광 또는 야간경관 활성화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합동협의회는 시장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공공콘텐츠)** ① 자유표시구역 사업자는 차별화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광고물등에 기본계획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문화·예술·공공 콘텐츠가 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민·관합동협의회는 국가, 서울시, 자치구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기존 광고주 등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민·관합동협의회는 국제행사, 연말연시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표출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광고물등의 안전관리

- 제13조(안전점검 대상·시기·방법)** ① 자유표시구역에 설치하는 법 제9조,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②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영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안전요건)**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안전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사업자·옥외광고대행사는 허가·신고 시 해당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에 의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광고물등 제작·설치 시 필요한 자재는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인증이 없는 제품인 경우 동등 규격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광고물등 내부 환기시설 또는 환기구 설치로 발열축적에 따른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용접 등 광고물 설치 시 소방 관련법규에 따른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중 광고물등 내부에 축적되는 먼지를 정기적으로 제거하도록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광고물등의 부착 장소가 외벽인 경우 외단열 부분에는 화재 확산 방지 또는 광고물등의 화재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안전점검 시기·절차)** ①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사과정 촬영)**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자는 접합상태, 용접상태,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 등을 포함한 중요한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여 최초 안전점검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광고물등의 사후관리

- 제17조(운영·성과분석)** ① 민·관합동협의회는 관람인원, 미디어, 콘텐츠(공공용을 포함한다) 운영현황 등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민·관합동협의회는 매년 당해 연도 운영성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분석을 하여야 한다.
- ③ 민·관합동협의회는 성과분석 자료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자유표시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자 등이 이 기준 및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8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278-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8-4번지 외 2필지(278-3, 278-1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8.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장

I.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8-4번지 외 2필지(278-3, 278-17)
- 면적 : 2,213.2㎡
- 결정 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II.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강남구 논현동 278-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논현동 278-4번지 외 2필지(278-3, 278-17)	-	증) 2,213.2	2,213.2	역세권 청년주택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신설	강남구 논현동 278-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2,213.2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213.2	-	2,213.2	100.0	논현동 278-4번지 외 2필지(278-3, 278-17)에 한함
주거 지역	소계	1,950.7	-	1,950.7	88.1	
	제3종일반주거지역	1,950.7	감) 1,950.7	-	-	
	준주거지역	-	증) 1,950.7	1,950.7	88.1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262.5	-	262.5	11.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남구 논현동 278-4번지 외 2필지(278-3, 278-17)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950.7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④	봉은사로	중심지 미관지구	논현동 200-8~ 삼성동 110-2	102,720 (286)	4,280 (24)	양측 12m	서고164호 (84.4.22)	

주) ()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해당사항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①	2,213. 2	논현동 278-3대	215.2	공동개발
			논현동 278-4대	1,771.3	
			논현동 278-17대	226.7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가구번호 신설 : ①	· 가파른 주거비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세권 부지에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획지계획 수립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계획내용	비고
용 도 계 획	지정 용도	1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권장 용도	a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불허 용도	A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장례식장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계획 수립

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70.00%	
용적률	기본용적률 : 447.44%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높이	60m이하	가로구역별 높이적용(봉은사로)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물 밀도계획 신설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447.44%이하 - 높이 : 60m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건축물밀도 계획 수립

•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기준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0%이상 ¹⁾	기본용적률 447.44%부여	· 모든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 건설기준	공공임대 : 민간임대	· 10 : 90 (비율 10이상 공공임대) (지상 1층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 쉬운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공동 이용시설	커뮤니티시설	· 50㎡ 이상 설치		

1)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10.0% 이상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16.11.04.) 준용

다. 건축물의 건축선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봉은사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 · 북측(8m)도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 · 서측(4m)도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2m 후퇴	

2)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봉은사로변	

라.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	비고
공공임대주택	447.44% 이하	부지면적의 10.0% 이상1) (195.1㎡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15.01㎡ (11.02%)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에 한함

1)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10.0% 이상 (195.1㎡ 이상)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2016.11.04.) 3-3-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III. 관계도면 : [붙임] (도면게재생략)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포함) 참조
생략(비치 도서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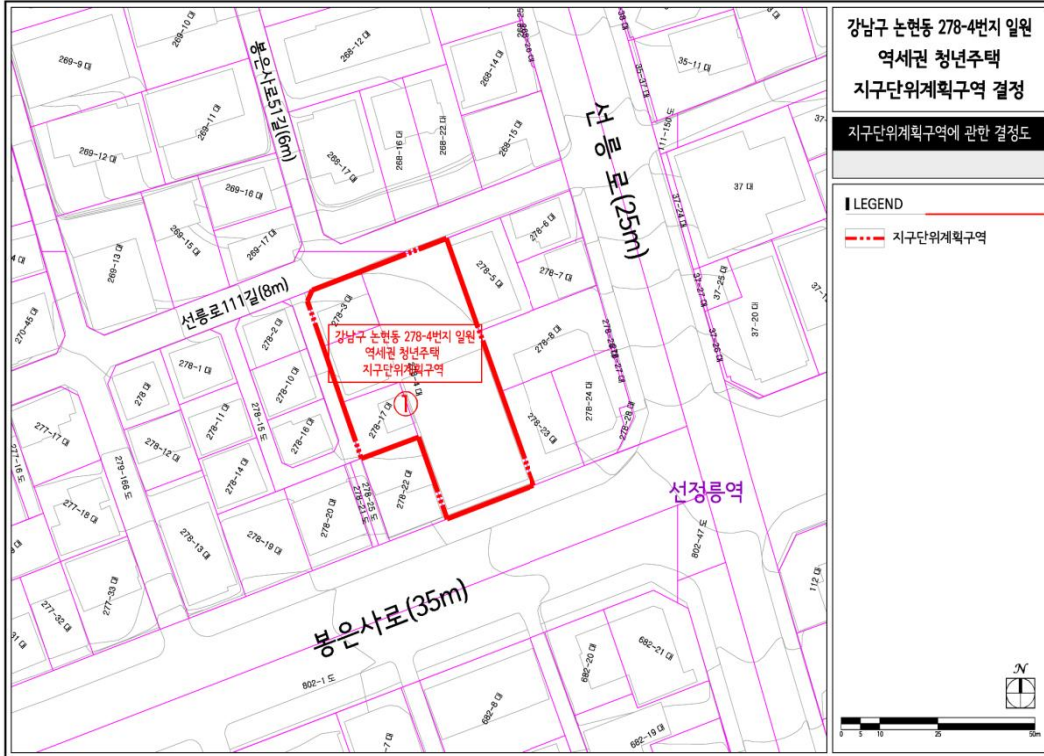
V. 관계서류 열람 방법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45)와 강남구청 1별관 3층 도시계획과(02-3423-6105)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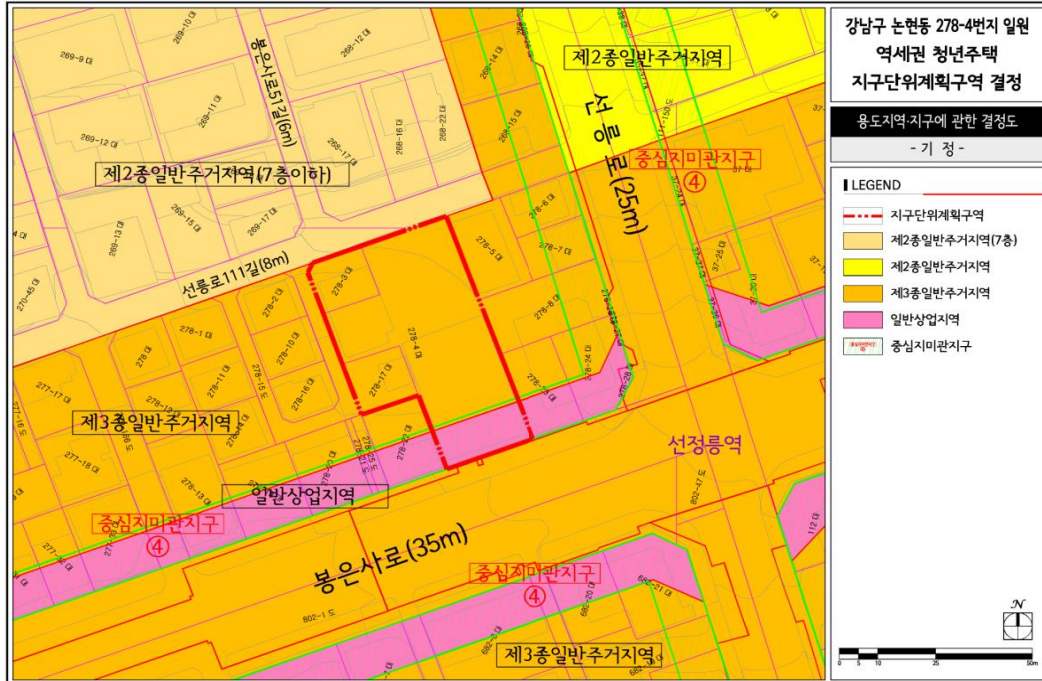
VI.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
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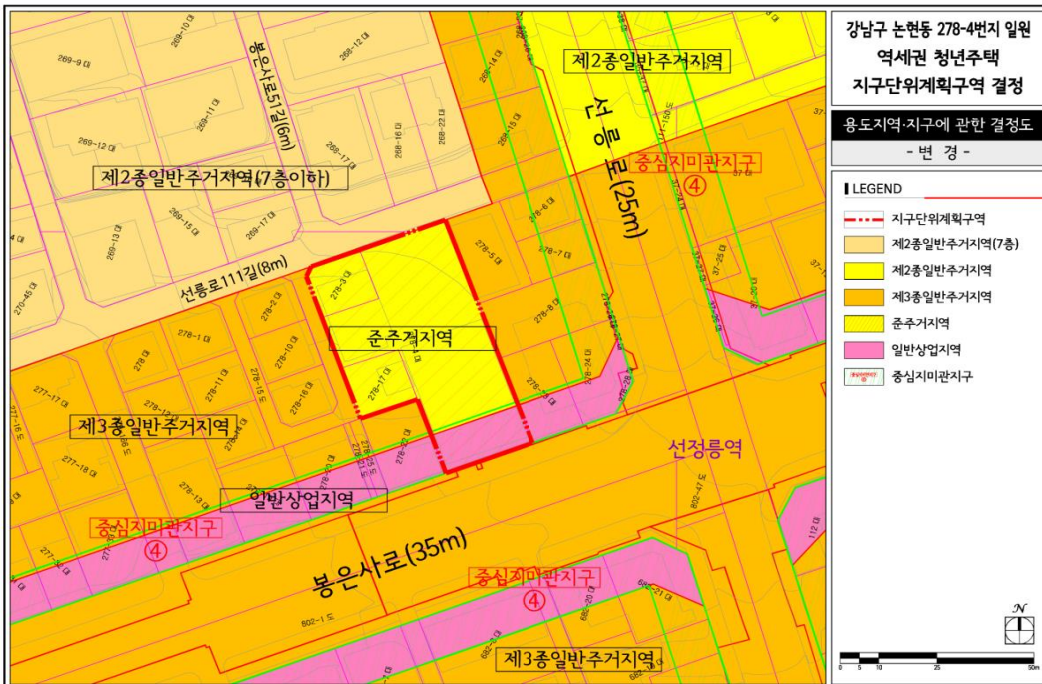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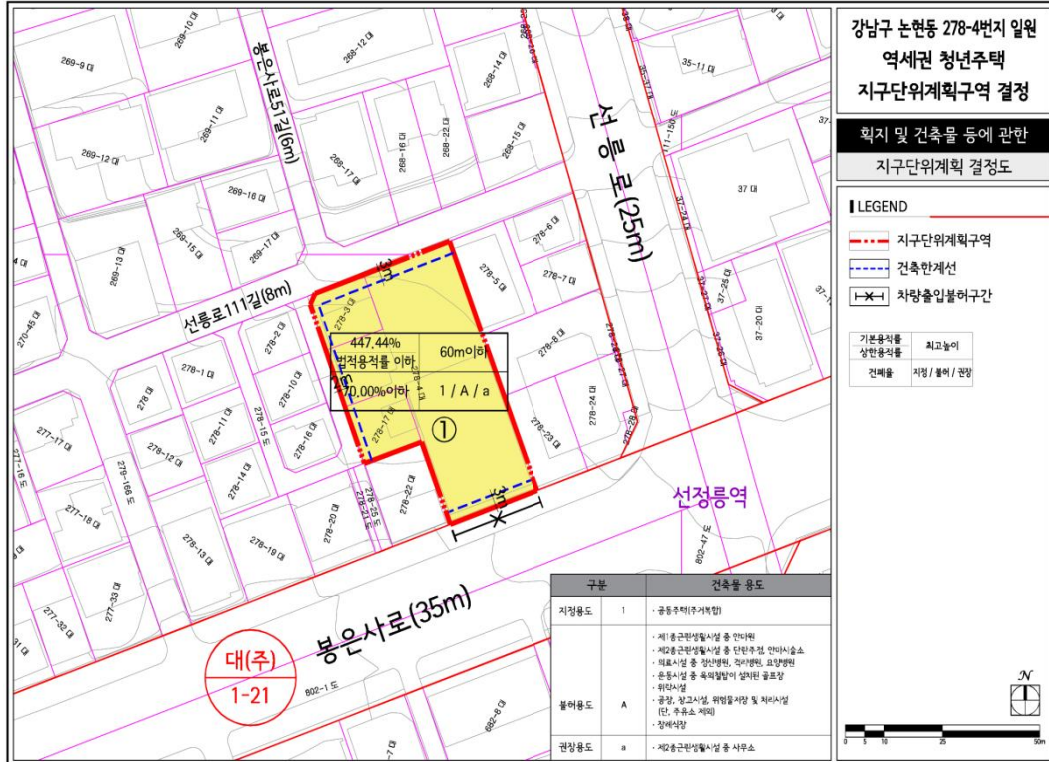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강남구 논현동 202-7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2-7번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강남구 논현동 202-7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7.3.15) 및 2017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3.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I.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2-7

- 면적 : 1,556.3㎡
- 결정 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II.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강남구 논현동 202-7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논현동 202-7	1,556.3	역세권 청년주택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신설	강남구 논현동 202-7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1,556.3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56.3	—	1,556.3	100.0	논현동 202-7번지에 한함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168.6	감)1,168.6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87.7	증)1,168.6	1,556.3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남구 논현동 202-7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168.6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	①	강남구 논현동 202-7번지	1,556.3	단독개발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계획내용	비고
용도 계획	지정용도	1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율 : 80%이상) ·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1층, 120㎡이상) · 청년활동지원시설 (2층전체)
	권장용도	(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불허용도	(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장례식장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제4호, 제6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8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높이	· 60m 이하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건폐율 8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체계를 준용하여 역세권 청년 주택을 건립하기 위함
-	· 기준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 높이 60m 이하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봉은사로)

• 용적률 적용기준

구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0%이상 ¹⁾	기본용적률 680% 부여	·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비주거비율		· 비주거 10% 이상 20% 미만 (지상 1층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 건설기준	공공임대 주택비율	· 공공임대 : 민간임대 = 25:75 (주거용적률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¹⁾)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39㎡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49㎡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 미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5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120㎡ 계획)		

주1)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10.0% 이상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16.11.04.) 준용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선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봉은사로변 : 건축한계선 3m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논현동 202-7번지에 한함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봉은사로변 : 전면부	논현동 202-7번지에 한함

2)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	비고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지역	680%	용도지역 변경 부지 면적의 25% 이상 ^{주1)} (292.15㎡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320.47㎡ (27.4%)	논현동 202-7번지에 한함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16.11.04.) 3-3-1 적용

4.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④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없음)

III. 관계도면 : [붙임] (도면계재생략)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포함) 참조
생략(비치 도서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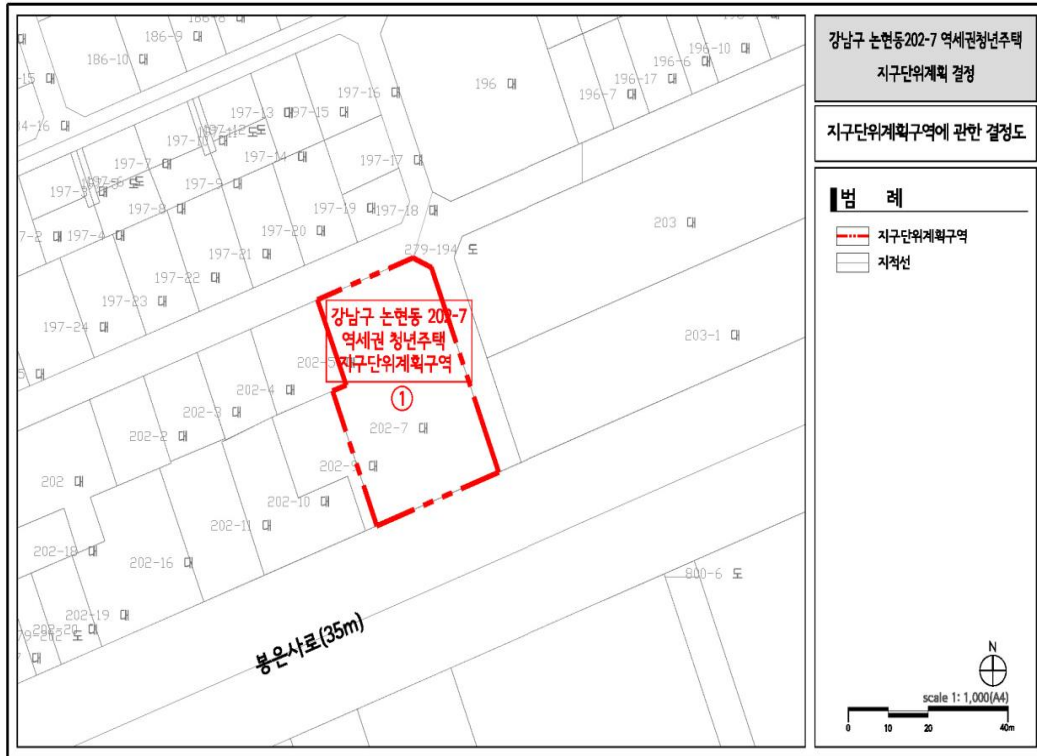
V. 관계서류 열람 방법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45)와 강남구청 1별관 3층 도시계획과(02-3423-61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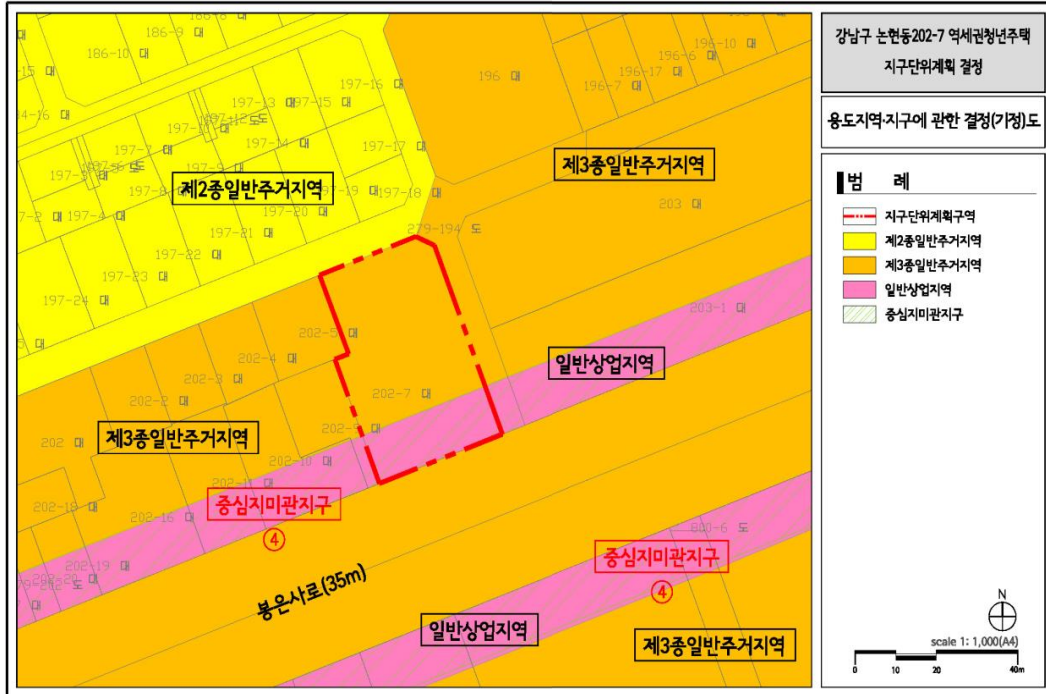
VI.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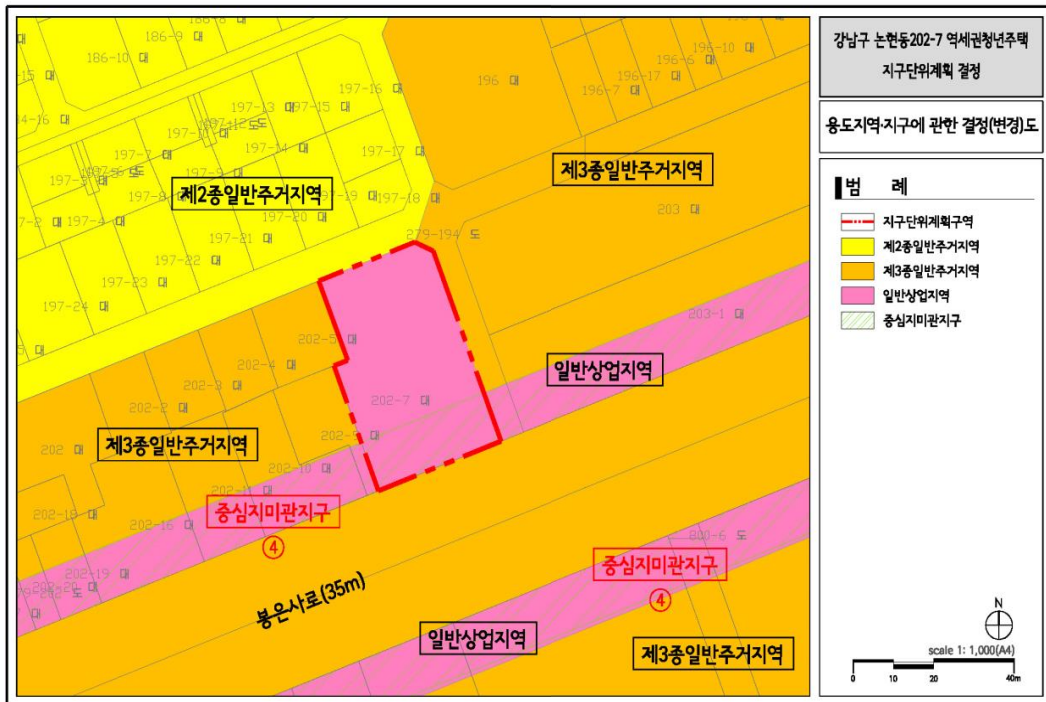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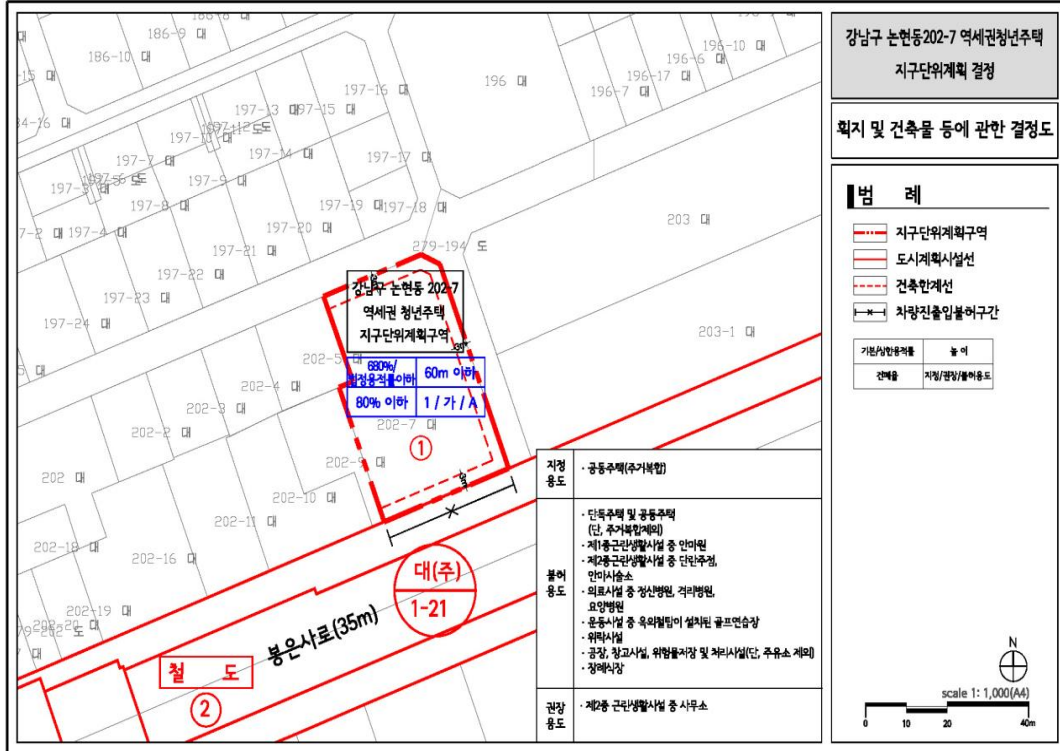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57호(2013.12.26.)로 결정(변경) 고시된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7.09.06.) 및 2017년 제1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09.1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I.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취지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03-6, 103-211

○ 면 적 : 1,546.4㎡

○ 결정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함

II.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84,840	-	184,840	100.0	
주거 지역	소 계	76,912	감) 1,546.4	75,365.6	40.8	대상필지: 쌍문동 103-6, -21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477	-	2,477	1.3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4	-	2,334	1.3	
	제3종일반주거지역	32,740	-	32,740	17.7	
	준주거지역	39,361	감) 1,546.4	37,814.6	20.5	
상업 지역	소계	66,079	증) 1,546.4	67,625.4	36.6	상동
	일반상업지역	66,079	증) 1,546.4	67,625.4	36.6	
공업 지역	소계	41,849	-	41,849	22.6	
	준공업지역	41,849	-	41,849	22.6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쌍문동 103-6 쌍문동 103-211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546.4	680%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

III. 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쌍문동 88번지 일대 창동 659번지 일대	184,840	-	184,840	서울시고시 제195호 1996.7.5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84,840	—	184,840	100.0	
주거 지역	소 계	75,365.6	—	75,365.6	40.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477	—	2,477	1.3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4	—	2,334	1.3	
	제3종일반주거지역	32,740	—	32,740	17.7	
	준주거지역	37,814.6	—	37,814.6	20.5	
상업 지역	소계	67,625.4	—	67,625.4	36.6	
	일반상업지역	67,625.4	—	67,625.4	36.6	
공업 지역	소계	41,849	—	41,849	22.6	
	준공업지역	41,849	—	41,849	22.6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	쌍문동 103-6	1,157.0	획지계획
변경	—	쌍문동 103-6, 쌍문동 103-211	1,546.4	획지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획지계획 변경 - 기정 : 1,157㎡ - 변경 : 1,546.4㎡	◦ 동일소유의 필지의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에 따른 획지계획 조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

■ 불허용도(변경없음)

- 권장용도(변경없음)
- 지정용도(신설)

구 분	지 정 용 도	비 고
(a)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쌍문동 103-6, -211에 한함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한함(오피스텔 제외)

■ 지정용도(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지정용도 신설 - 공동주택(주거복합)	◦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쌍문동 103-6, -211에 한하여 지정용도를 신설함

(2) 건축물의 개발밀도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폐율	◦ 60% 이하	◦ 좌동	변경없음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이하	쌍문동 103-6, -211에 한함
높이	◦ 50m 이하	◦ 60m 이하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 용적률 및 높이결정(변경)조서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 용적률 변경 - 기정 : 기준용적률 250%, 허용용적률 350% - 변경 : 기본용적률 680%이하, 상한용적률 법정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대상지의 용적률 체계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 높이 변경 - 기정 : 50m이하 - 변경 : 60m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대상지의 높이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구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0% 이상(309.28 ㎡ 이상)	◦ 기본용적률 680% 부여	◦ 쌍문동 103-6, -211에 한함 ◦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10%이상 ~20% 미만 (지상 1 층 비주거설치의무)		
	주거	주거비율	◦80% 초과 90%이하		
		공공:민간	◦20 : 80 (공공임대 20% 이상)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 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 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이행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시설 미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50㎡ 이상 주민커뮤니티 설치		

※ 「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16.11.04.) 준용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은 북카페 80㎡이상으로 계획함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조서(변경없음)

(4)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분	공공기여율	계획	비고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의 20% 이상 (309.28㎡이상)	20.13% (311.27㎡)	쌍문동 103-6, -211에 한함. 공공기여계획 면적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로 산정

※ 「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16.11.04.) 3-3-1 적용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3.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4. 인센티브 운영계획(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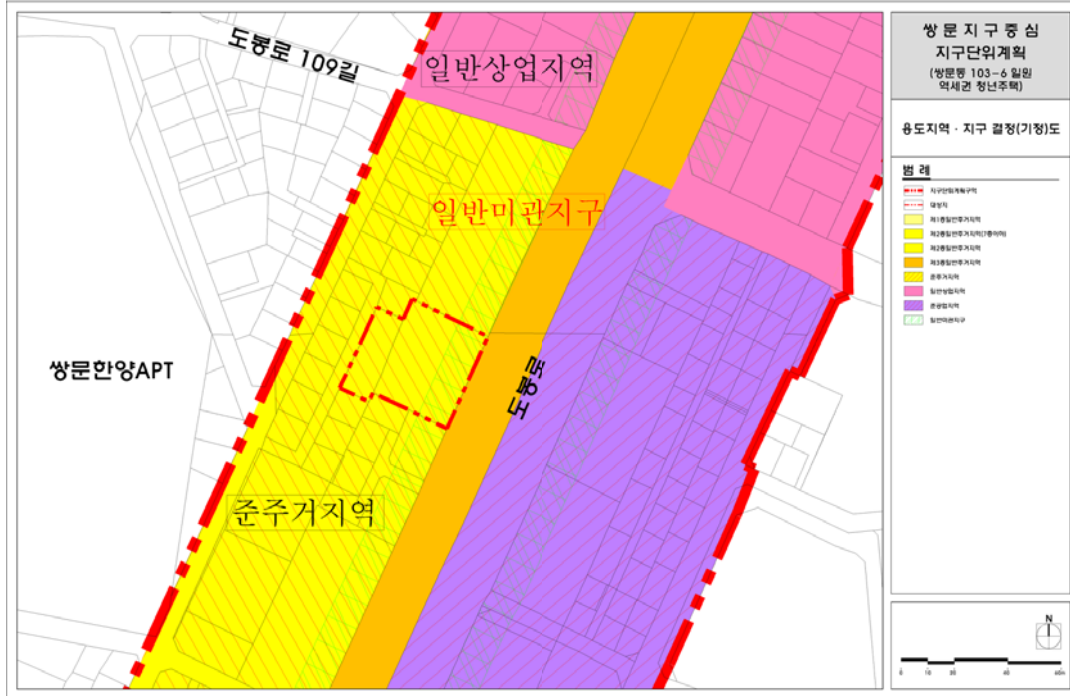
IV. 관계도면 : [붙임] (도면게재생략)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포함) 참조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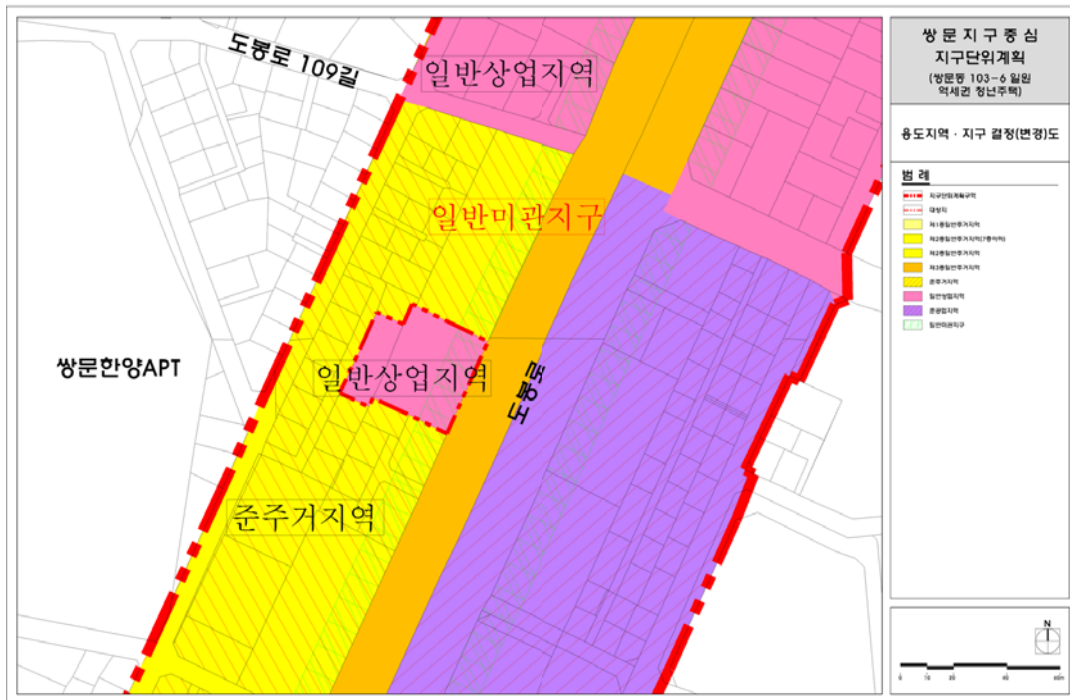
VI.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본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32)와 도봉구 도시계획과(☎02-2091-356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VII.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건축허가 전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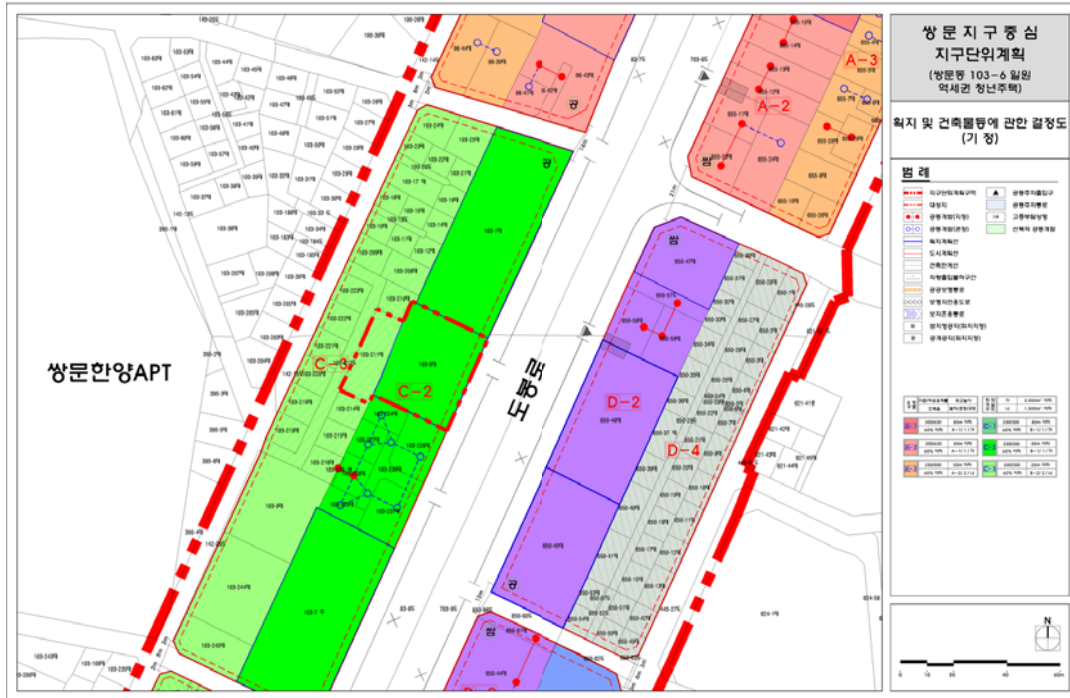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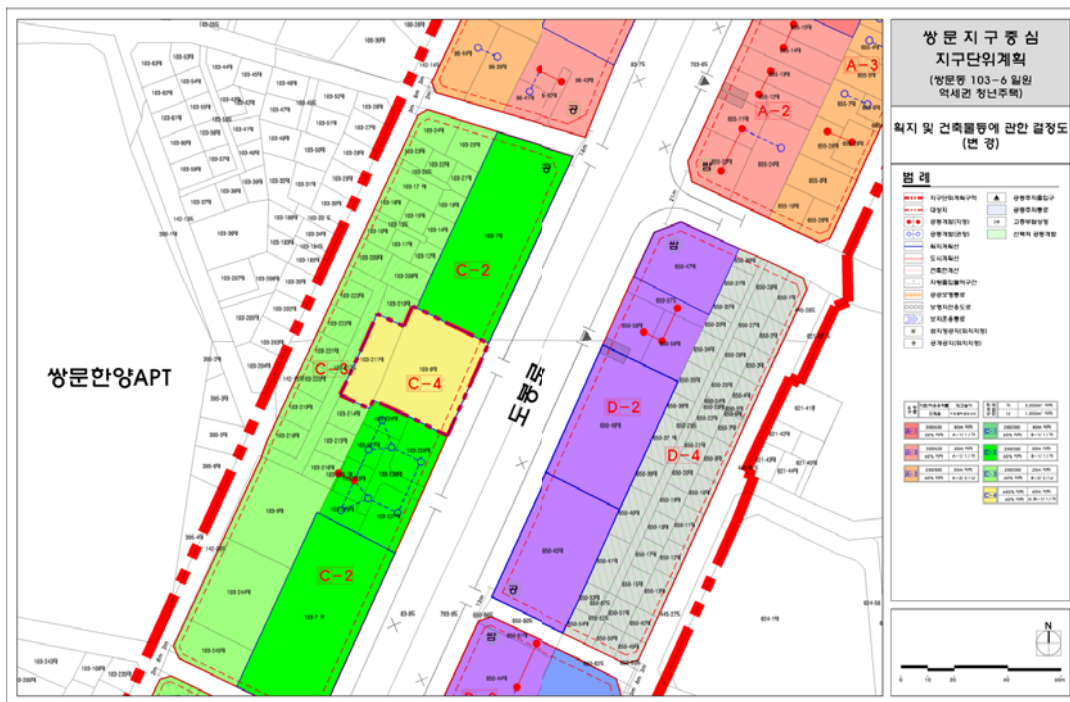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1호

여의천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공사의 명칭 : 여의천 하천정비(단면확장) 보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2015년 탄천 등 10개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된 여의천 내 보축공사를 시행하여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를 확보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안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하천공사의 개요(변경)

	하천명	사업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업량(m)			착수 및 준공예정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기타	착수	준공	
당초	여의천	여 의 천 하천정비 (단면확장) 보축공사	새원교	양재IC	L=659 좌 412 우 247	L=429	자전거도로 L=820	'17.5	'18.12	
변경	여의천	여 의 천 하천정비 (단면확장) 보축공사	새원교	양재IC	L=659 좌 412 우 247	L=429	자전거도로 L=820	'18.1	'18.12	

※보상 협의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착수일 변경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염곡동, 양재동 지내(별첨 위치도 참조)

당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염곡동 지내(별첨 위치도 참조)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염곡동, 양재동 지내(별첨 위치도 참조)

※ 동누락에 따른 변경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하천공사 시행자 : 서초구청

나. 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 착수일 : 2017. 5. - 준공예정일 : 2018. 12.
변경	- 착수일 : 2018. 1. - 준공예정일 : 2018. 12.

※보상 협의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착수일 변경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과 소유자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의 명세(변경)

: 별첨 참조(편집토지 및 물건조서, 무상귀속 및 무상사용 협의조서)

7. 관계도서(실시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지형도면 등) 열람 및 문의처

- 서초구청 물관리과 (☎ 02-2155-7156)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구 분	전 체	연차별 투자계획 (백만원)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당초	사업비	3,320	50	1,000	2,270	-	
변경	사업비	3,450	50	1,000	2,400	-	

※편집토지 추가에 따른 보상비 증가

9. 공사예정공정(변경) :

당초	2017. 5. ~ 2018. 12.
변경	2018. 1. ~ 2018. 12.

※보상 협의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착수일 변경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하천시설 관리(공사기간 동안)

11. 폐천부지등 발생예상면적 : 없음

12. 하천공사(보축) 위치도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초구청
○ 사업명 : 여의천 하천정비(단면확장) 보충공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성명	소유권이외 의 권리	주 소	성 명	비 고
		당초	변경 (분할후)		공부	단초	편입 (분할후)	지분	주 소					
계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31-11	531-11	천	2,276.0	2.0	2.0	공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31-1	531-1	천	3,089.0	1,964.0	1,964.0	공		서울특별시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7-2	547-7	답	391.0	86.0	86.0	성남시문당구문당동39 셋별마을403-801		이용숙	근저당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 합중양회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 합중양회	
											근저당권	안양시동안구호계동1055 무궁화아파트104-901	소병운	
											근저당권	서울강남구대치동985 대치차우성아파트203-1205호	최동희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7-5	547-5	답	39.0	39.0	39.0	성남시문당구문당동39 셋별마을403-801		이용숙	근저당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 합중양회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 합중양회	
											근저당권	안양시동안구호계동1055 무궁화아파트104-901	소병운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성명	소유권이외 의 권리	주 소	성 명	비 고
		당초	변경 (분할후)		공부	당초	편입 변경 (분할후)	지분	주 소					
				공부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13	548-13	천	829.0	829.0	829.0	공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서울강남구대치동985 대치처우성아파트203-1205호	최동희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7-4	547-4	답	164.0	164.0	164.0	서울송파구잠실동86아시아 신수환아파트13동603호		최석우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7-1	547-6	답	576.0	126.0	126.0	서울송파구잠실동86아시아 신수환아파트13동603호		최석우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7	548-20	대	864.0	35.0	35.0	서울특별시 성북구 1170		임범무	근저당권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1	남부농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서울 서초구 양재동 5-10	남서농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67 (태평로2가)	삼성카드주 식회사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1	548-19	답	2,992.0	118.0	11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9길 4-20(길음동)		임범무	근저당권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1	남부농업협 동조합	
											지상권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1	남부농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1	남부농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서울 서초구 양재동 5-10	남서농업협 동조합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성명	소유권이외 의 권리	주 소	성 명	비 고
		당초	변경 (분할후)		공부	당초	편입 변경 (분할후)	지분	주 소					
				공부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16	548-16	천	472.0	218.0	218.0	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세종대로67 (태평로2가)	삼성카드 주식회사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51-2	551-8	전	18.0	5.0	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68-1		김정귀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51-6	551-6	도	15.0	1.0	1.0	공		서초구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15	548-15	천	90.0	3.0	3.0	공		서울특별시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43-1	243-1	천	7,875.0	1,321.0	1,321.0	공		서울특별시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10	250-10	도	118.0	115.0	115.0	공		서울특별시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43-2	243-2	천	791.0	787.0	787.0	공		서울특별시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2	250-2	도	335.0	126.0	126.0	공		서울특별시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6	250-6	천	8.0	8.0	8.0	공		서울특별시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49-5	249-5	전	1.0	1.0	1.0	공		서울특별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성명	소유권이외 의 권리	주 소	성 평	비 고
		당초	변경 (분할후)		공부	당초	변경 (분할후)	지분	주 소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9	250-9	천	106.0	106.0	106.0	공		서울특별시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49-4	249-4	천	110.0	92.0	92.0	공		서울특별시				
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5	250-5	천	608.0	604.0	604.0	공		서울특별시				
23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49-3	249-3	천	25.0	4.0	4.0	공		서울특별시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8	250-8	천	422.0	262.0	262.0	공		서울특별시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4	250-4	천	1,154.0	1,154.0	1,154.0	부산시남구광안동 502-2 봉황 에이동 106호		전영기				
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43	243	천	3,611.0	3,552.0	3,552.0	공		서울특별시				
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0-3	250-3	구	460.0	197.0	197.0	공		서울특별시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52-1	252-1	천	996.0	864.0	996.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9-8		이일청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73-6	273-6	천	1,569.0	676.0	676.0	공		서울특별시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곡동	273-4	273-4	구	230.0	14.0	14.0	공		서울특별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비고
		지번			공부	면적		지분	주소					
		당초	변경 (분할후)			당초	변경 (분할후)							
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78-2	278-2	천	94.0	94.0	94.0	144/72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28 한양아파트 71-101	박혜숙				
								96/72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28 한양아파트 71-101	김용국				
								96/72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9 한양아파트 36-107	김용식				
								275/515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24, 201호(마로니에아파트)	조민기	근저당권	서울특별시서초구동신로6길3 (양재동)	영동노인 협동조합	
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	228	천	22,472.8	7,243.0	7,243.0		공	서울특별시				
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53-1	253-1	천	81.0	0.0	8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9-8	이일청				

무상귀속 및 무상사용 협의조서

○ 사업시행자 : 서초구청
 ○ 사 업 명 : 여의천 하천정비(단면확장) 노후공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영곡동, 양재동

영점 번호	해당동	지번 (위치)		지목	면적 (㎡)	현재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영조	영조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신원동	531-11	전	전	2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2	신원동	531-1	전	전	1,964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3	신원동	548-13	전	전	829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4	신원동	546-16	전	전	218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5	신원동	551-6	도	도	1	도	서초구	구유지					
6	신원동	548-15	전	전	3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7	영곡동	243-1	전	전	1,321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8	영곡동	250-10	도	도	115	도	서울특별시	시유지					
9	영곡동	243-2	전	전	787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10	영곡동	250-2	도	도	126	도	서울특별시	시유지					
11	영곡동	250-6	전	전	8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12	영곡동	249-5	전	전	1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13	영곡동	250-9	전	전	106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14	영곡동	249-4	전	전	92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15	영곡동	250-5	전	전	604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16	영곡동	249-3	전	전	4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17	영곡동	250-8	전	전	262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18	영곡동	243	전	전	3,552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19	영곡동	250-3	구	구	197	구	서울특별시	시유지					
20	영곡동	273-6	전	전	676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21	영곡동	273-4	구	구	14	구	서울특별시	시유지					
22	양재동	228	전	전	7,243	전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역 구분	평면(㎡)	지번 (부지)	지면 (㎡)	비인면적 (㎡)	식재이음 수용	수량자			관계인			비고
						량	식	량	량	식	량	
계					18,125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초구청

○ 사업명 : 여의천 하천정비(단면확장) 보육공사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점물명	용도	단위	수량	면적(m ²)	주소	성명	비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1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26.5	공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31-1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21.9	공	서울특별시	
3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7.3	공	서울특별시	
4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55.3	공	서울특별시	
5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12.2	공	서울특별시	
6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14.8	공	서울특별시	
7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9.3	공	서울특별시	
8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2.1	공	서울특별시	
9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24.2	공	서울특별시	
10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13.0	공	서울특별시	
11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30.1	공	서울특별시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7-2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29.8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9 셋방 마을 403-801	이용숙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7-4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27.8	서울송파구잠실동880아사아선수 촌아파트 13호 603호	최석우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7-1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13.3	서울송파구잠실동880아사아선수 촌아파트 13호 603호	최석우	
15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33.4	서울송파구잠실동880아사아선수 촌아파트 13호 603호	최석우	
16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16.3	서울송파구잠실동880아사아선수 촌아파트 13호 603호	최석우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1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7.2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양로9길 4-20(길음동)	임병무	
18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양로9길 4-21(길음동)	임병무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16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9.1	공	서울특별시	
20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9.9	공	서울특별시	
21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14.8	공	서울특별시	
22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22.1	공	서울특별시	
23			공작물	비닐하우스	동	1	65.2	공	서울특별시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	공공시설물	환기구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8-15	공공시설물	가로등재이기	식	1		공	서울특별시	
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전력주	본	1		공	서울특별시	
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통신주	본	1		공	서울특별시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통신주	본	1		공	서울특별시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1천	공공시설물	통신행물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오수행물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오수행물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오수행물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오수행물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3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오수행물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35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1천	공공시설물	보인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36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2천	공공시설물	도로 반시경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3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인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38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인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인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40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인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4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인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50-4천	공공시설물	보인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43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인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50-4천	공공시설물	보인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45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인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46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인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보인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초구청

○ 사 업 명 : 여의천 하천정비(단면확장) 보축공사

순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단위	수량	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48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31-1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49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31-1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31-1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51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548-13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5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73-6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47-4답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55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5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5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5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5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6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6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6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6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안등	본	1		공	서울특별시	
64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43천	공공시설물	휴대전화 중계기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65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50-3구	공공시설물	휴대전화 중계기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6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8천	공공시설물	보조 지지주	개소	1		공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2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8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 제16조,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의 경우

구분	주거	비주거
㉠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미만

2) 제1호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구 분	내 용
전면 대수선 ¹⁾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 씩 낮추어 적용 (㉠ → ㉡, ㉡ → ㉢, ㉢ → ㉣, ㉣ → ㉤)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을 적용하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적용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전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을 적용하며,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하는 부위에 대해 적용 ²⁾

1) 전면 대수선: 건축물의 단열을 포함한 외피 및 설비시스템 전체를 철거 후 성능 개선을 시행하는 공사(전면 대수선과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전면 대수선으로 적용)

2)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열손실의 변동이 있는 부위가 포함된 실(공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미적용

다.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

구 분	내 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주거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제29호까지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규모	○ 주 거 : 동별 세대수의 합계 ○ 비주거 :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냉·난방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2. 적용기준

가. 환경성능 부문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환경성능	녹색건축인증		㉠		그린 1등급
			㉡		그린 2등급
			㉢		그린 4등급
	재료 및 자원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공통	4급수준 이상
	물순환 관리	절수형 기기 사용			3급수준 이상
	실내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4급수준 이상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주거	3급수준 이상
		화장실 급배수 소음			4급수준 이상
	※ 환경성능의 세부 평가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환경부고시)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근거서류평가 기준을 따름				

나. 환경관리 부문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대상	주거	비주거
환경관리	저녹스보일러	㉠ ㉡ ㉢	저녹스보일러 설치 (개별난방 방식인 경우에 한함) 권장	가스보일러 및 가스이용 냉방설비 설치 시 저녹스버너 사용 제품 적용 권장
		㉣	-	-
	저공해자동차	㉠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권장 단,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 권장 단,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기숙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	-	-
	※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오피스텔은 저녹스보일러(주거) 기준 적용			

다. 에너지성능 부문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에너지 성능부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주거	㉠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1+등급 이상 평균전용면적 60㎡ 이하: 1등급 이상	
				㉡, ㉢ ²⁾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1등급 이상 평균전용면적 60㎡ 이하: 2등급 이상	
			비주거	㉠	1+등급 이상	
				㉡	1등급 이상	
				㉢	2등급 이상	
	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 (W/㎡·K)	거실의 외벽	공통	㉣	EPI3) 건축부문 1번 항목 0.9점 이상	
		지붕			EPI 건축부문 2번 항목 0.9점 이상	
		바닥			EPI 건축부문 3번 항목 0.9점 이상	
		기밀성능			창 및 문	EPI 건축부문 5번 항목 0.9점 이상
		냉·난방 열원설비 ¹⁾			EPI 기계부문 1번/2번 항목 0.9점 이상 (열원설비 신설 또는 교체의 경우)	
		폐열회수 환기장치			EPI 기계부문 6번 항목 적용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EPI 전기부문 11번 항목 1점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			EPI 전기부문 12번 항목 0.8점 이상	

- 1) 평가내용 중 냉·난방 열원설비와 관련된 냉난방 장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2) '17.12.15.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는 주거용(㉡, ㉢)의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3) 에너지성능지표(EPI): EPI의 점수 및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라. 에너지 관리 부문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주거	비주거
에너지 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	㉠ + 데이터 분석기능	㉠+BEMS 설치
		㉡	㉡ +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¹⁾ 모니터링 기능	㉡ + 5종 이상 에너지 용도별 ²⁾ 모니터링 기능
		㉢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데이터 분석 기능

1) 에너지원별 :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전기, 가스, 지역난방, 수도 등)
 2) 5종 이상 에너지 용도별 구분 기준 : [필수] 난방, 냉방, 급탕 [선택] 공조용 팬, 펌프(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 전등, 전열, 엘리베이터 중 선택

마. 신·재생에너지 부문

※ 민간 건축물 의무설치비율(%) 산정방식(단위 : kWh/m²·y)
 = 규모별 설치비율(%) - 대체비율(%)
 대체비율은 규모별 설치비율의 최대 50% 미만까지 인정

1) 연도별 설치비율(%)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공공건축물		15%	18%	21%	24%	27%	30%	-	-	-
민간건축물	주거	2%	3%	4%	5%	6%	7%	8%	9%	10%
	비주거	7%	7%	9%	9%	11%	11%	12%	12%	14%

2) 규모별 설치비율(%)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주거용	비주거용
신·재생에너지	$\frac{\text{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text{신·재생에너지 생산량}} \times 100$	㉠	연도별 설치비율	연도별 설치비율
		㉡	연도별 설치비율 -0.5%포인트	연도별 설치비율 -1.0%포인트
		㉢	연도별 설치비율 -1.0%포인트	연도별 설치비율 -2.0%포인트
		㉣	자율	자율

※ 세부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환경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을 따름
 (다만,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생산량을 230kWh/m²·y으로 반영)

3) 대체비율

구 분	내 용																																				
성능 대체비율	1) 성능대체비율 (단위: kWh/m²·y) ※ 주거: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 10 당 대체비율 0.25% 포인트씩 대체 인정 ※ 비주거: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 15 당 대체비율 0.5% 포인트씩 대체 인정																																				
	<table><tr><th colspan="2">주 거</th><th colspan="2">비주거</th></tr><tr><th>1차에너지소요량 차이</th><th>대체비율</th><th>1차에너지소요량 차이</th><th>대체비율</th></tr><tr><td>10 이상</td><td>0.25%</td><td>15 이상</td><td>0.50%</td></tr><tr><td>20 이상</td><td>0.50%</td><td>30 이상</td><td>1.00%</td></tr><tr><td>30 이상</td><td>0.75%</td><td>45 이상</td><td>1.50%</td></tr><tr><td>40 이상</td><td>1.00%</td><td>60 이상</td><td>2.00%</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주 거		비주거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	대체비율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	대체비율	10 이상	0.25%	15 이상	0.50%	20 이상	0.50%	30 이상	1.00%	30 이상	0.75%	45 이상	1.50%	40 이상	1.00%	60 이상	2.00%	.	.	.	.	.	.	.	.	.	.	.	.
	주 거		비주거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	대체비율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	대체비율																																	
	10 이상	0.25%	15 이상	0.50%																																	
	20 이상	0.50%	30 이상	1.00%																																	
	30 이상	0.75%	45 이상	1.50%																																	
	40 이상	1.00%	60 이상	2.00%																																	
	.	.	.	.																																	
	.	.	.	.																																	
.	.	.	.																																		
2)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 산정(단위 : kWh/m²·y) ※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 = 규모별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값(a) - 대상건축물의 1차에너지소요량(b)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주거</th><th colspan="3">비주거</th></tr><tr><th>㉠</th><th>㉡</th><th>㉢</th><th>㉠</th><th>㉡</th><th>㉢</th></tr><tr><td>규모별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값(a)</td><td>120*/150**</td><td colspan="2">150*/190**</td><td>200</td><td>260</td><td>320</td></tr><tr><td>대상건축물 1차에너지 소요량(b)</td><td colspan="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결과 혹은 1차에너지소요량 분석결과</td></tr><tr><td colspan="7">*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 평균전용면적 60㎡ 이하</td></tr></table>	구 분	주거			비주거			㉠	㉡	㉢	㉠	㉡	㉢	규모별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값(a)	120*/150**	150*/190**		200	260	320	대상건축물 1차에너지 소요량(b)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결과 혹은 1차에너지소요량 분석결과						*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 평균전용면적 60㎡ 이하									
구 분		주거			비주거																																
	㉠	㉡	㉢	㉠	㉡	㉢																															
규모별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값(a)	120*/150**	150*/190**		200	260	320																															
대상건축물 1차에너지 소요량(b)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결과 혹은 1차에너지소요량 분석결과																																				
*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 평균전용면적 60㎡ 이하																																					
대지외부 대체비율	1) 설치형태 : 신설(기존 설치된 신재생은 미인정) 2) 설치장소 : 대상건물 대지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 3) 제출서류 : 신재생설치용량 및 신재생적용비율계산서, 설치 전·후 사진 및 도면, 설치관련 계약서(협정서) 및 활용계획서, 납품확인서 등 증빙서류																																				

3.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인센티브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이상	9%	6%
	1등급	6%	3%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등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 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ZEB 1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15%
ZEB 2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14%
ZEB 3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13%
ZEB 4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12%
ZEB 5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1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2)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 건축물의 신축 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센티브

1) 신축(증·개축 포함)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이상	15%	10%
	2등급	10%	5%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기타
1등급 이상	15%	10%	3%
2등급	10%	3%	-
기타	3%	-	-

※ 인증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경감

4. 신청 서식: 별지 서식에 따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 2016. 2. 4.)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기초공사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존 기준의 폐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 2016. 2. 4.)는 폐지한다.

[별표 1]

냉난방 장치 설치기준(제2호다목 관련)**1. 적용대상 및 기준**

가. 대상 : ㉠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적용기준 : EPI 기계부문 1~2번 항목 0.9점 이상 (신설 또는 교체 시)

적용대상 \ 적용수준		주거 ㉠ 급	비주거 ㉠ 급
EPI 기계부문 1번(난방)	개별난방방식	1.0점 이상	0.9점 이상
	그 외	0.9점 이상	0.9점 이상
EPI 기계부문 2번(냉방)		0.9점 이상	0.9점 이상

2. 적용의 예외

구 분	내 용	적용사항
1	전체 난방 용량의 80% 이상을 축열식 전기난방,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 난방,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으로 채택한 경우	EPI 기계부문 1번 항목 평가 제외
2	전체 냉방 용량의 80% 이상을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단, 가스히트펌프 방식은 제외), 지역냉방 또는 소형열병합 냉방으로 채택한 경우	EPI 기계부문 2번 항목 평가 제외
3	입주자 공사분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시 까지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신설하거나 교체하지 않는 경우	EPI 기계부문 1번 또는 2번 항목 평가 제외

[별표 2]

에너지성능지표(EPI_Energy Performance Index)

(제2호다목 관련)

평가내용			배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건 축 부 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W/m²·K) (창 및 문을 포함)		비주거	0.470미만	0.470~ 0.640미만	0.640~ 0.820미만	0.820~ 1.000미만	1.000~ 1.180미만
			주거	0.350미만	0.350~ 0.420미만	0.420~ 0.500미만	0.500~ 0.580미만	0.580~ 0.66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W/m²·K)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		0.110미만	0.110~ 0.120미만	0.120~ 0.140미만	0.140~ 0.160미만	0.160~ 0.1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W/m²·K)		0.120미만	0.120~ 0.160미만	0.160~ 0.200미만	0.200~ 0.240미만	0.240~ 0.290미만	
기 계 부 문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m³/h·m²))		1등급 (1m³/h·m² 미만)	2등급 (1~2m³/h·m² 미만)	3등급 (2~3m³/h·m² 미만)	4등급 (3~4m³/h·m² 미만)	5등급 (4~5m³/h·m² 미만)	
	1.난방 설비 (효율%)	기름 보일러		93이상	90~ 93미만	87~ 90미만	84~ 87미만	84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90이상	86~ 90미만	84~ 86미만	82~ 84미만	82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2.냉방 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5.18 이상	4.51~5.18 미만	3.96~4.51 미만	3.52~3.96 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계수, COP)	① 1중효용	0.75 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 미만
			② 2중효용	1.2	1.1~	1.0~	0.9~	0.9
			③ 3중효용	이상	1.2미만	1.1미만	1.0미만	미만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6.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 비			전체 환기소요량의 60% 이상 적용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 배점)					
전 기 부 문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30 % 이상	24%이상~ 30%	17%이상~ 24%	10%이상~ 17%	5%이상 ~10%	
	12.제5조제11호차목에 따른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 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80% 이상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40%이상 ~50%	

[별지 서식] 서울형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제4호 관련)

서울형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

○ 사업 개요

사 업 명	000 신축공사		
건 축 주	00건설(주) 대표이사 000		
대지위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대지면적	000.00(㎡)	냉난방면적	000.00(㎡)
건축면적	000.00(㎡)	건 폐 율	000.00(%)
연 면 적	000.00(㎡)	용 적 률	000.00(%)
건물규모	지하 00층, 지상 00층	최고높이	000(m)
용 도	00 시설	건물동수	00(동)
용도별면적	000시설 : 000.00㎡ , 000시설 : 000.00㎡		
추진경위	- 2016.00.00. :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 신청 구분

구 분		적 용 여 부 (■ 표시)			
용도		☐ 주거	☐ 비주거		
등급		☐ Ⅰ	☐ Ⅱ	☐ Ⅲ	☐ Ⅳ
행위 (별첨1)		☐ 신축, 별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전면 대수선	☐ 수직 또는 수평 증 축, 일부 개축, 일 부 재축	☐ 기타
선택사항	에너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신재생에너지	☐ 성능대체	☐ 외부대체	☐ 해당없음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 높이	☐ 해당없음	

○ 성능 적용 수준

항 목				적용 수준		근거
				적용기준	설계내용	
환경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그린3등급	
	기술	유해물질 저감 자재 (등급)		4급 (5개 이상 사용)	3급 (11개 사용)	
		절수형 기기 (등급)		3급 (4점 이상)	3급 (4점)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등급)		4급 (2점 이상)	3급 (2.1점)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급)		3급 (RC180mm이상)	3급 (RC200mm)	
		화장실 급배수 소음 (등급)		4급 (4점 이상)	3급 (5점)	
	관리	저녹스보일러 (적용)		적용	적용	
		저공해자동차		주차면 5% 콘센트 2%	주차면 5% 콘센트 5%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등급 (320kWh/㎡·y이하)	2등급 (280kWh/㎡·y)	
	기술	외피 평균 단열성능*	외벽 (배점)	0.9점 (0.640W/㎡ · K미만)	0.9점 (0.500W/㎡ · K)	
			지붕 (배점)	0.9점 (0.120W/㎡ · K미만)	1.0점 (0.110W/㎡ · K)	
			바닥 (배점)	0.9점 (0.160W/㎡ · K미만)	0.9점 (0.160W/㎡ · K미만)	
		기밀성능*	창 및 문 (배점)	0.9점 (2등급)	0.9점 (2등급)	
		냉·난방 열원설비*	난방 (배점)	0.9점 (1등급 제품)	0.9점 (1등급 제품)	
			냉방 (배점)	0.9점 (1등급 제품)	1.0점 (고효율인증제품)	
		폐열회수 환기장치 (배점)		적용 (60% 이상)	적용 (80%)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배점)		1.0점 (30% 이상)	1.0점 (33%)	
		대기전력차단장치* (배점)		0.8점 (60% 이상)	0.8점 (65%)	
	관리	에너지모니터링 및 분석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신재생	원별 설치 규모	태양광 (kW)	100kW	100kW	
태양열 (㎡)			—			
지열 (kW)			—			
연료전지 (kW)			—			
집광채광 (set)			—			
신재생에너지공급률 (%)		5%	5%			
외부설치 (%)		1%	1%			

※ 에너지 절감 기술 중 * 사항은 '적용기준' 을 법적기준으로 작성

○ 건축기준 완화비용

항 목	적용기준	완화비용		근거
		용적율	높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10~15%)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완화기준	(3~9%)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구 분	건축 분야	설비 분야	전기 분야
설 계 자	(주)00사사무소 (인)	(주)000사무소 (인)	(주)00종합기술 (인)
	참여기술자 0 0 0	참여기술자 0 0 0	참여기술자 0 0 0
	02-0000-0000	02-0000-0000	02-0000-0000
담 당 공무원	홍 길 동 ☎ 02-0000-0000		

○ 검토서 체크리스트(인·허가단계)

항목			근거서류	검토사항
환경성능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정 확인서	인증서 등급의 확인
	재료 및 자원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녹색건축인증 신축 비주거용/주거용 3.4항목 관련서류(자재별 인증서, 적용부위 도면 및 사용계획서)	산출기준 4급(유해물질 저감 자재를 5개 이상 10개 미만 사용한 경우) 이상 확인
	물순환관리	절수형 기기 사용	녹색건축인증 신축 비주거용/주거용 4.3항목 관련서류(환경표지인증 대상 제품 인증서 및 서류, 해당도면)	산출기준 3급 이상 확인
	실내 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녹색건축인증 신축 비주거용/주거용 7.1항목 관련서류(자재별 인증서, 적용부위 도면 및 사용계획서)	비주거 용도별 산출기준, 주거 4급 이상 확인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녹색건축인증 주거용 7.7항목 관련서류(차음구조 인정서 및 시험성적서, 해당도면)	산출기준 3급 이상 확인
		화장실 급배수 소음	녹색건축인증 주거용 7.9항목 관련서류(해당 도면 및 시방서, 시험성적서 등)	산출기준 4급 이상 확인
	환경관리	대기질 개선	저녹스 보일러	장비일람표(대상 장비 비교란에 '저녹스 보일러 사용' 등을 표기)
저공해 자동차			관련도면(주차장 평면도, 주차계획도, 전열설비 배선도, 전기차 충전 설비 상세도 등)	저공해자동차 주차공간 및 전기차 충전설비(콘센트 등) 설치 여부 확인

항목				근거서류	검토사항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정확인서 • 주거일 경우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또는 절약계획서	• 인증서 등급 및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확인
	절감 기술	평균 열관류율	외벽	•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1번항목 확인 가능서류(세움터 등)	• 배점 0.9점 이상 확인
			지붕	•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2번항목 확인 가능서류(세움터 등)	• 배점 0.9점 이상 확인
			바닥	•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3번항목 확인 가능서류(세움터 등)	• 배점 0.9점 이상 확인
에너지	절감 기술	기밀성	창 및 문	•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5번항목 확인 가능서류(세움터 등)	• 배점 0.9점 이상 확인
		냉·난방 열원설비		•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 2번 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 배점 0.9점 이상 확인
		폐열회수 환기장치		•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6번 항목 확인 가능서류(세움터 등)	• 배점 1점 적용 확인
		LED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 에너지성능지표 전기부문 11번 항목 확인 가능서류(세움터 등)	• 배점 1.0점 이상 확인
		대기전력차단장치		• 에너지성능지표 전기부문 12번 항목 확인 가능서류(세움터 등)	• 배점 0.8점 이상 확인
에너지 관리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기능		• 시스템 설치 도면 및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서	• 기준충족(장비설치) 여부 확인
		에너지 용도별 모니터링 기능		• 시스템 설치 도면 및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서	• 기준충족(장비설치) 여부 확인
		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 시스템 설치 도면 및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서	• 기준충족(장비설치) 여부 확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2)
신재생 에너지		원별 설치 규모		• 신재생 설치 도면, 계산서	• 신재생 설치용량 확인
		신재생에너지공급률		• 적용비율계산서 • 설계개요	• 적용비율 확인 • 용도, 연면적 확인

○ 검토서 체크리스트(건축심의단계): 건축기준 완화 적용 건축물일 경우

항목	근거서류	검토사항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정 확인서와 가제점표(예시 참고)	인증 등급의 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정확인서와 적용요소계획 (예시 참고)	인증 등급의 확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이상) (예비)인증서 혹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도면 및 계산서	인증 등급의 확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3호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관악구 신림동 75-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1996.8.14)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1호(2017.5.25)로 결정(변경)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9.13.) 심의를 거쳐,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장

I.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5-6, 75-62, 75-63
- 면적 : 1,652.0㎡
- 결정 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함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498,588.0	증) 992.0	499,580.0	1996.08.14. (서고 제231호)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증가 - 기정 : 498,588.0㎡ - 변경 : 증) 992.0㎡ - 변경 후 : 499,580㎡	•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신림동 75-62, 75-63 번지의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으로의 편입에 따 른 구역변경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총괄 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98,588.0	증) 992.0	499,580.0	100.0	
주거 지역	소계	353,641.6	증) 992.0	354,633.6	71.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35,770.5	-	35,770.5	7.2	
	제3종일반주거지역	76,956.6	-	76,956.6	15.4	
	준주거지역	240,914.5	증) 992.0	241,906.5	48.4	
상업 지역	소계	144,946.4	-	144,946.4	29.0	
	일반상업지역	144,946.4	-	144,946.4	29.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52.0	-	1,652.0	100.0	
주거 지역	소계	1,652.0	-	1,652.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992.0	감) 992.0	-	-	
	준주거지역	660.0	증) 992.0	1,652.0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관악구 신림동 75-62번지 외 2필지(75-62, 75-63번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준주거지역	992.0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 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자 함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대지규모 결정조서(변경 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1) 획지 및 공동개발 기준(변경 없음)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42 (신림동) (도곽E)	18,220.7	1641-1대 75-6대	754.7	권장	• 1641-1 : 단독개발 가능(과소필지) • 과소필지 해소 및 적정개발규모 유도

• 변경

가구번호	면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42 (신림동) (도곽E)	19,212.7	1641-1대	94.7	획지	• 신림동 75-62, 75-63 필지의 편입에 따른 가구면적 증가 • 1641-1 : 단독개발 가능(과소필지) •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신림동 75-6, 75-62, 75-63 공동개발 지정
		75-6대	1,652.0	지정	
		75-62대			
		75-63대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가구번호 42(신림동) 면적 변경 - 18,220.7㎡ → 19,212.7㎡(증 922㎡) • 공동개발 지정 - 신림동 75-6, 75-62, 75-63	•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신림동 75-62, 75-63 필지의 편입에 따른 가구면적 증가 •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공동개발 지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 1) 불허용도 결정조서(변경 없음)
- 2) 권장용도 결정조서(변경 없음)
- 3)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신설)
 -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지 정 용 도	비 고
신설	A	- 공동주택주 ¹⁾ (주거복합) ※ 단, 지상1층은 비주거용도 설치	• 신림동 75-6, 75-62, 75-63 번지에 한함 • 커뮤니티시설(스터디카페, 지상 2층, 192.8㎡) 계획 • 커뮤니티시설(체력단련실, 지하 1층, 159.1㎡) 계획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항제2호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지정용도 신설 - 신림동 75-6, 75-62, 75-63 : 공동주택 (주거복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신림동 75-6, 75-62, 75-63' 3필지에 지정용도 신설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폐율		· 60% 이하	· 변경 없음	· 신림동 75-6, 75-62, 75-63 번지에 한함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20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 기본용적률 : 437.40% 이하 ¹⁾ · 상한용적률 : 법정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일반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용적률 중 주거부분 허용 용적률 250% 이하	—	

1) 용도지역이 다른 획지간 공동개발에 의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산정방식 적용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 기정 사항 중 접도조건 양호 : 주거지역 8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 접도조건 불량 : 주거지역 8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

※ 기정 사항 중 용도지역 변경 시기 : 1991.5.11. 이후 적용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적률 변경 - 지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허용 : 200%/20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기준/허용 : 250% / 350% 이하) - 변경 : 기본용적률 437.40% 이하 : 상한용적률 법정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신림동 75-6, 75-62, 75-63' 의 용적률 체계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준주거지역 기준을 준용하여 변경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구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부지 면적의 11.64%(183.39㎡) 이상	기본용적률 437.40% 이하 부여	· 신림동 75-6, 75-62, 75-63에 한함 ·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구분	주거 공공임대 : 민간임대	· 15:85(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향시) - 공공임대 15% 이상		
주택 건설기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자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 미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5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상 2층 192.8㎡, 지하 1층 159.1㎡ 계획)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

1)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고
기정	준주거지역	남부순환로변	60m 이하	·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높이제한사항 완화 · 신림동 75-6, 75-62, 75-63에 한함
변경			65m 이하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 \leq 1.5D$)을 적용하지 않음)

※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높이로 적용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2)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높이 변경 - 기정 : 60m 이하 - 변경 : 65m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신림동 75-6, 75-62, 75-63'의 높이계획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최고 높이 및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높이제한사항 완화

라. 건축물 배치계획

1) 계획기준(변경 없음)

2) 계획요소(변경 없음)

3)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건축한계선	간선부	남부순환로	3m 후퇴	변경 없음
신설	건축한계선	이면부	남부순환로180길	3m 후퇴	신림동 75-6, 75-62, 75-63에 한함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건축한계선 신설 - 남부순환로180길 변 건축한계선 3m 신설	· 대상지가 접한 남부순환로180길 변의 협소한 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여 3m 폭원의 건축한계선 신설

마.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계획

구분		계획내용	적용기준	비고
전면 공지	간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3m	변경 없음
	이면 도로변	건축한계선을 통한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건축한계선 3m	· 신림동 75-6, 75-62, 75-63에 한함

나. 공공기여방안(변경 없음)

다.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라. 공공기여계획(신설)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	비고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37% 이하	부지 면적의 11.64% 이상 ^{주1)} (183.39㎡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12.35% (194.52㎡)	신림동 75-6, 75-62, 75-63에 한함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④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없음)

III. 관계도면 : [붙임] (도면게재생략)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포함) 참조
 생략(비치 도서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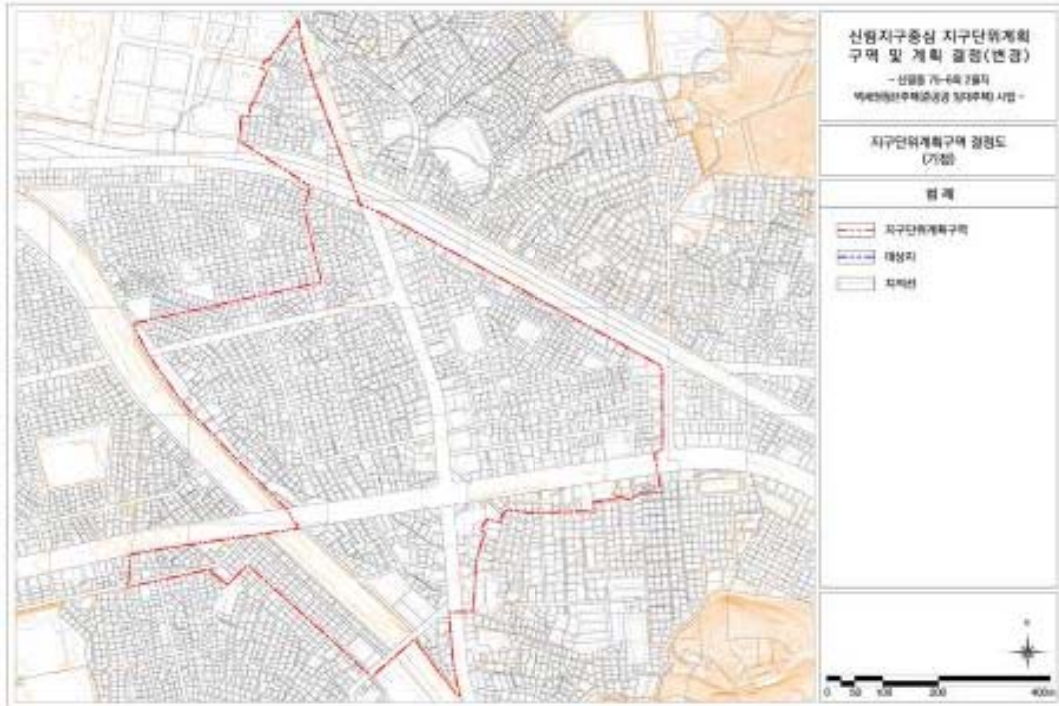
V. 관계서류 열람 방법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32)와 관악구청 6층 도시계획과(02-879-6361)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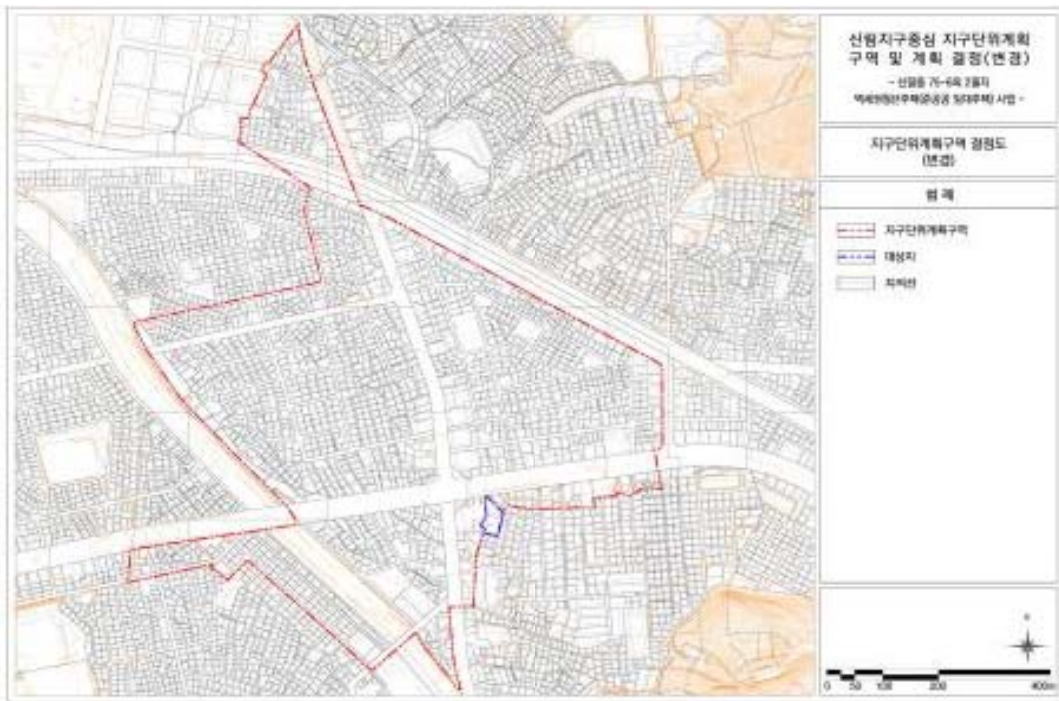
VI.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
 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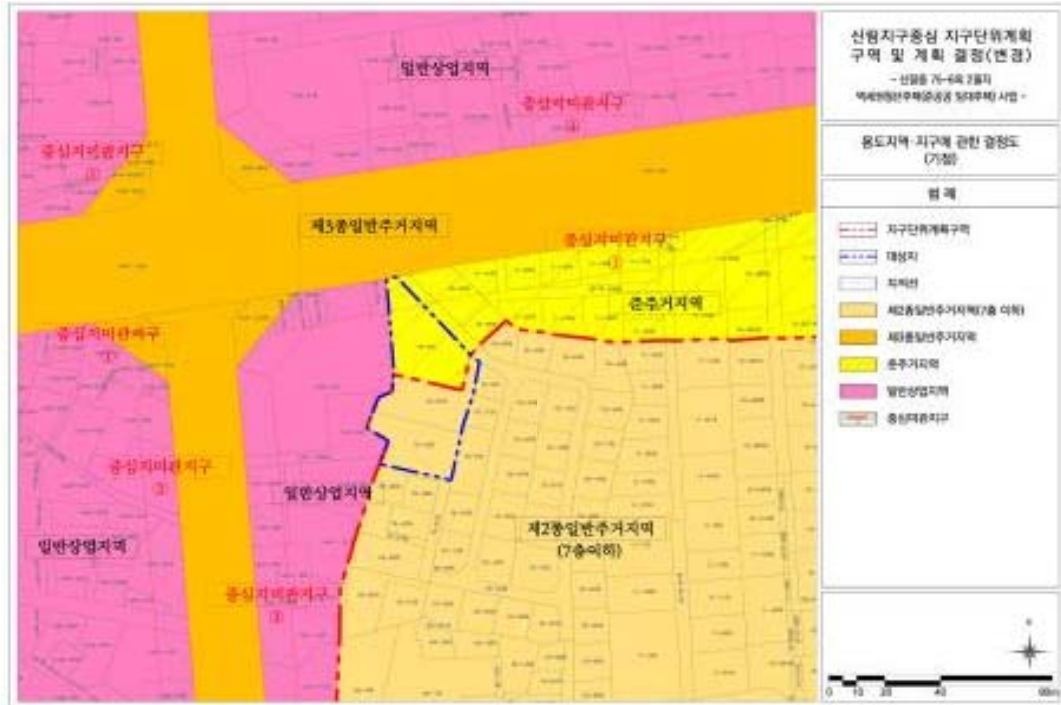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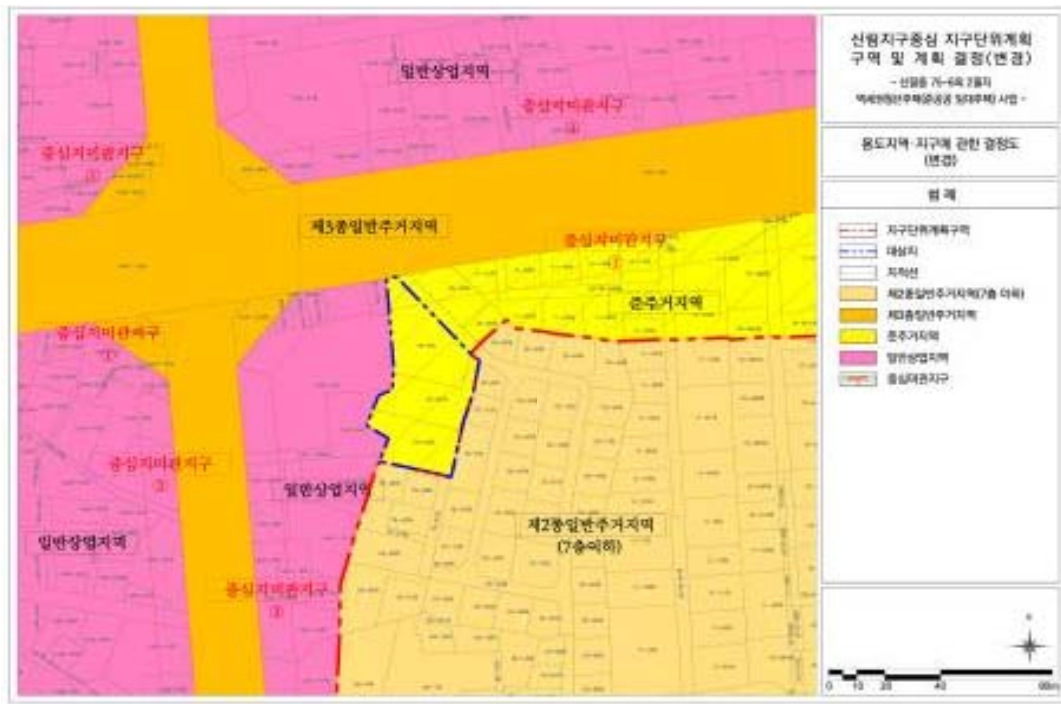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4호

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7호(2017. 3. 2)로 확정·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중인 도봉구 창동 1-9호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2017년 9월20일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3조의2,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9호
 - 면적 : 27,42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서고제2017-77호, 2017. 3.2)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계획기간 내 선도사업인 본 사업을 포함한 창업센터,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및 인근지역의 지식형첨단산업 등 특화산업집적지 및 복합상업·업무거점 조성을 계획함
 - 이에 대상구역은 서울아레나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산업관련 기업, 동북권 창업센터에서 육성된 성장형 창업기업의 유치·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및 관련산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또한 광역교통망[KTX연장(수서~의정부), GTX신설(c-노선)]에 따른 광역중심지로서 필요한 핵심기능과 지원기능 도입을 통해 광역교통의 거점지역 및 복합환승센터를 도입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
 - 시행자(제안자)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 ~ 2025. 12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7,423	100.0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상업 용지	소계	19,116	69.7	
	(가칭)창업및문화산업단지	10,746	39.2	
	복합환승센터	8,370	30.5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8,307	30.3	
	도 로	4,745	17.3	
	공 원	1,400	5.1	
	광 장	2,162	7.9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1) 도로계획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2,261	49,650	3	1,155	17,540	-	-	-	2	1,106	32,110
대로	2	1,106	32,110	-	-	-	-	-	-	2	1,106	32,110
중로	2	585	11,840	2	585	11,840	-	-	-	-	-	-
소로	1	570	5,700	1	570	5,700	-	-	-	-	-	-

2) 도시공간시설

(1) 광장계획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광장	도봉구 창동1-9호	2,162	

(2) 공원계획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소공원	도봉구 창동1-9호	1,400	

7. 토지의 명세 및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리자		
시	구	동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관리구분	주소	성명
서울시	도봉구	창동	1-9호	27,423	27,423	서울특별시	-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 포함)

- 구역지정을 제외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서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명칭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도봉구 창동1-9호	-	증)27,423	27,423	-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 신설 - 면적 : 27,423㎡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명칭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서울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봉구 창동1-9호	-	증)27,423	27,423	-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울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27,423㎡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다.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2,261	49,650	3	1,155	17,540	-	-	-	2	1,106	32,110
대로	2	1,106	32,110	-	-	-	-	-	-	2	1,106	32,110
중로	2	585	11,840	2	585	11,840	-	-	-	-	-	-
소로	1	570	5,700	1	570	5,700	-	-	-	-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93	25	-	660	창동1	창동 183-23	일반도로	-	서고185 (73.12.03)	
변경	대로	3	193	25 ~28	-	660	창동1	창동 183-23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37-1	35	-	446	창동1	창동1	일반도로	-	건고738 (63.12.24)	
변경	대로	3	37-1	35 ~36	-	446	창동1	창동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362	20	-	445	창동1	창동1	일반도로	-	서고92-460 (92.12.31)	
변경	중로	1	362	20 ~23	-	445	창동1	창동1	일반도로	-		
신설	중로	1	A	21	국지도로	140	중로 1-362	대로3 -37-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82	10	국지도로	570	창동 182-33	창동 30-4	일반도로	-	서고185 (73.12.03)	
변경	소로	1	82	10 ~14	국지도로	570	창동 182-33	창동 30-4	일반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대로3-193	대로3-193	· 폭원변경 - 폭원 : 대상지 내 3m 확폭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폭
대로3-37-1	대로3-37-1	· 폭원변경 - 폭원 : 대상지 내 1m 확폭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폭
중로1-362	중로1-362	· 폭원변경 - 폭원 : 대상지 내 3m 확폭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폭
중로1-A	중로1-A	· 신설 - 폭원 : 21m - 연장 : 140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1-82	소로1-82	· 폭원변경 - 폭원 : 대상지 내 4m 확폭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폭

(2)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4	기타 주차장시설	도봉구 창동 1-9호	27,423	감)27,423	-	서울시고시460 (1992.12.31.)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4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면적 : 27,423㎡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따른 주차장 폐지

2) 공간시설

(1) 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소공원	도봉구창동1-9호	-	증)1,400	1,400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1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1,400㎡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따른 신설

(2) 광장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광장	교통광장	도봉구 창동1-9호	-	증)2,162	2,162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1	광장	· 교통광장 신설 - 면적 : 2,162㎡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따른 신설

※ 소공원 및 광장계획은 향후 2지구 상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변경 예정임

11. 기타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검토사항

1. 실시계획인가(1지구)시 다음 사항 검토
 - 1-1. 1지구 지하 공용주차장(267면) 계획시 공공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한 배치(지하2~3층 계획) 적정성 및 도시계획시설(입체적결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 1-2. 1지구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주거도입 등에 따라 실제 상주인구가 발생함을 고려하여 인구수용계획 필요성 검토.
 - 1-3. 기정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임을 감안하여 보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기부채납 등 가능성 검토.
 - 1-4. 구역 내부 도로 신설(21m)계획 관련 공용주차장 등 차량 동선 및 보행 동선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
 - 1-5. 1지구 북측 공개공지는 향후 건축계획수립시 가로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
2. 2지구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시 현황 환승주차장의 규모(543면) 뿐 아니라 향후 창동역 KTX 연장, GTX 신설 등을 고려하여 공용주차장계획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3. 기반시설계획 관련 창동역과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효용성 있는 기반시설계획 측면에서 남서측 광장 및 북측 소공원의 통합계획 필요성 검토.

12.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단 (☎ 02)2133-8284)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 02)2091-3556)
 - 서울주택도시공사 토목기술부 (☎ 02)3410-7578)

별첨1. 도시개발구역 결정도



별첨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붙임3. 사업지구 분할 결정도



별첨4. 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54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변경)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94	(사)팔잡 (대표 : 조현철)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 사회활동가, 비정규노동 자 등 쉼터 마련	690 (현금및 물품)	전국	'17.9.20~ '18.9.14
						'17.9.20~ '18.11.30
2017-95	(사회복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 : 이경식)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55	- 국내외 저소득가정에 생 계비, 의료비, 먹거리, 생필품 지원	300 (현금및 물품)	전국	'17.9.20~ '18.8.18
						'17.9.20~ '19.8.18
2017-96	(사)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대표 : 강응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15다길 66	-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신 장	1,000 (현금및 물품)	전국	'17.9.20~ '18.7.26
						'17.9.20~ '19.7.26
2016-97	(재)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대표 : 함세웅)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38	- 식민지역사자료 보관과 전시 및 시민교육 기능 을 갖춘 종합아카이브 구축	1,000 (현금및 물품)	전국	'17.9.20~ '18.9.7
						'17.9.20~ '19.9.7
2017-98	(사)스포츠타터스 (대표 : 이지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21길 8	- 국내외 소외되거나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방문 의료상담 및 봉사활동	938 (현금및 물품)	전국	'17.9.20~ '18.6.30
						'17.9.20~ '18.12.31
2017-10 -1	(사회복지)한국 사회복지관협회 (대표 : 최주환)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 저소득층 대상자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및 문제 해소	1,000 (현금) (400)	전국	'17.1.23~ '18.1.22
						'17.1.23~ '19.1.22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5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한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길 ** (동빙고동)	일시 : 2017-07-07 09:16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현릉로 내용 : 차량의 제한 축하중 1.4t 초과	과태료:50만원
김영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30번길 *** (반송동)	일시 : 2017-07-18 02:34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송파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9m 초과	과태료:30만원
장순돈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70번길 *--** (양촌읍)	일시 : 2017-07-19 05:39 장소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9m 초과	과태료:30만원
김일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55, *0*-*0*(양촌읍)	일시 : 2017-07-27 06:28 장소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8m 초과	과태료:3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명	주소		
심현우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6번길 ** (하성면)	일시 : 2017-05-02 04:4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9m 초과	과태료:30만원
박종두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116, *0*-2**(마동)	일시 : 2017-05-24 20:54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현릉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8m 초과	과태료:30만원
김정열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9, *-**6(옥련동)	일시 : 2017-05-28 06:24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15m 초과	과태료: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10.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4,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98호(1997.04.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건설부고시 제2007-658호(2007.07.12.)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 강동구고시 제2011-30호(2011.05.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953호(2011.12.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호(2012.01.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1구간) 개설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9) 및 하남시 건설과(☎031-790-50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35-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감일~초이간 광역도로(1구간) 개설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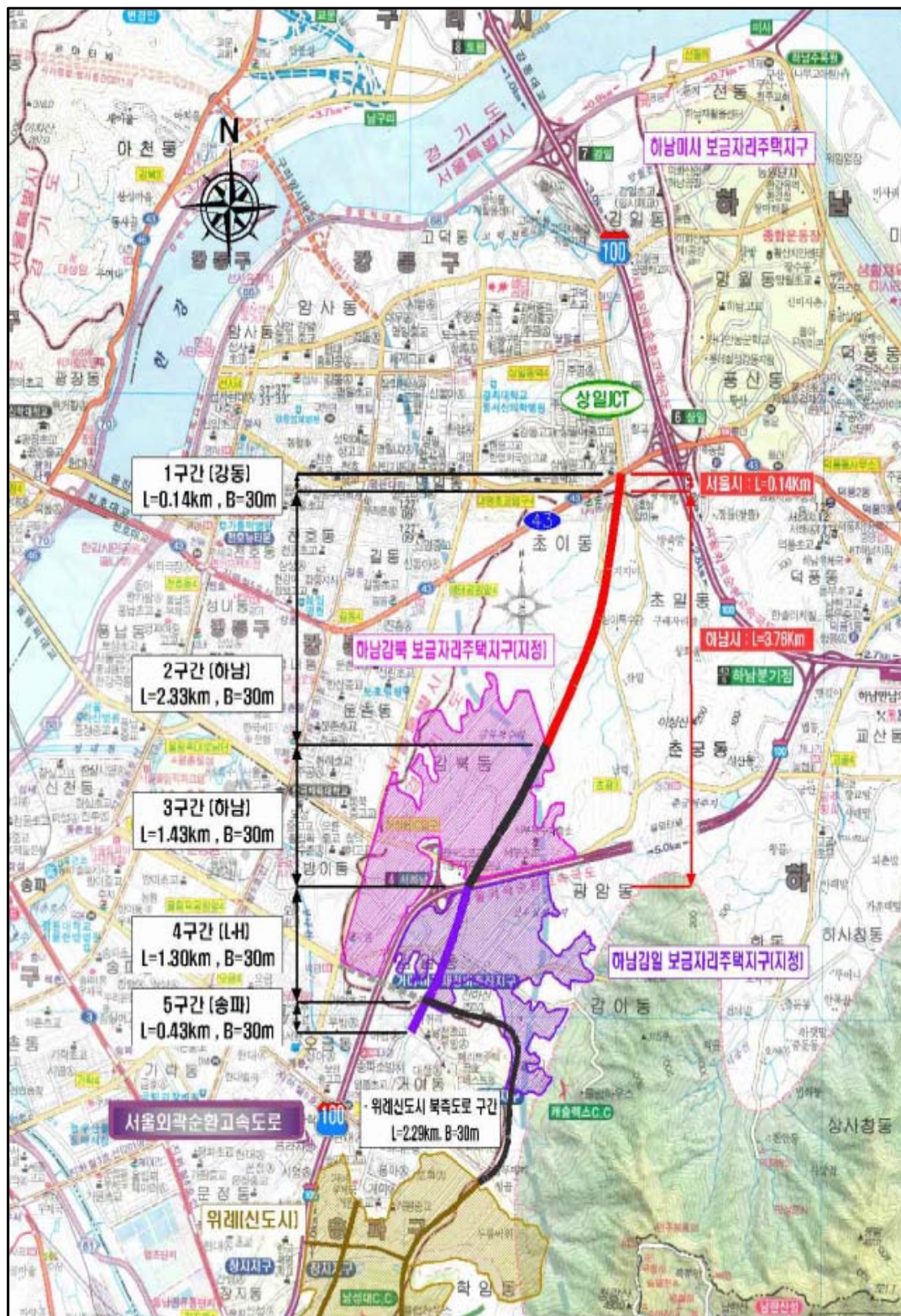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4,974㎡
- 규모 : 폭 30m, 연장 135.92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하남시장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마. 사업완료일 : 2016년 11월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67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설계업1종 (E-2-521) 전문감리업 (S-2-512)	(주)승진이엠씨 (110111-6501012)	이명근	서울 관악구 봉천로 564, 2층 (봉천동, 영신빌딩)	2017.09.1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6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한주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 23, ***동 ***호 (신포동1가, ***아파트)	일시: 2017-05-19 06:00 장소: 양천구 신월동 내용: 제한 폭 0.24m 초과	처분일: 2017. 8.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0.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주광영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26길 6-8, ***호 (형곡동, *****)	일시: 2017-05-10 05:35 장소: 서부간선로 내용: 제한 축하중 1.8t 초과	처분일: 2017. 6.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8. 31.
임한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36번길 8, *동 ***호 (일산동, ****)	일시: 2017-05-11 05:23 장소: 성산대교 남단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3.8t 초과	처분일: 2017. 6.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8. 31.
박수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38길 *-*, ***호 (국우동)	일시: 2017-05-16 21:22 장소: 벌말로 내용: 제한 폭 1.4m 초과	처분일: 2017. 6. 27. 과태료: 100만 원 납기일: 2017. 8. 31.
조용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 (건건동)	일시: 2017-05-23 15:11 장소: 남부순환로 내용: 제한 축하중 1.7t 초과	처분일: 2017. 6.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8. 31.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17. 10.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72호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안) 열람공고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안)을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신 분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장

가.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 대상 : 경국사(성북구), 호암사(금천구), 도안사(노원구)

나.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8일간

다.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으로 갈음)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02-2133-2522)
- 성북구 문화체육과(☎ 02-2241-2605)
- 금천구 문화체육과(☎ 02-2627-1452)
- 노원구 문화과(☎ 02-2116-3787)

마.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안)

연번	사찰명	사찰 소재지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지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비고
1	경국사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53	정릉동 산1-268	4,261	4,261	
			정릉동 산93-3	14,281	14,281	
			정릉동 산94	2,777	2,777	
			정릉동 산93-2	99	99	
			정릉동 754	456	456	
2	호암사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234	시흥동 233	3,993	3,187	
			시흥동 산98	14,777	7,904	
			시흥동 산95	31,736	6,344	
			시흥동 701	30	30	
			시흥동 235	545	545	
			시흥동 702	684	515	
			시흥동 233-1	340	340	
3	도안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5-1	상계동 산155-1	426,942	10,18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75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1. 등록 직인(등록사유 : 2017. 7.1.字 조직신설에 따른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서울식물원 재무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17.9. 25.	
	서울식물원 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76호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현황

업체명	수리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업체 연락처	등록일
이유종합건설 주식회사	보수단청업 (01-01-0022)	110111-0908066	유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 30 (도곡동)	02-556-4804	17.09.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0) 또는 역사문화재과(☎ 02-2133-2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77호

서울특별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잠실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지역을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1. 환경정비구역 지정 지역 : 잠실상수원보호구역 내 강동구 강일동 탄천물재생센터 처리구역 내
2. 환경정비구역 지정 위치 :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932㎡(가래여울마을 내 6필지)
- 강일동 153-3, 강일동 138-25, 강일동 21, 강일동 153-2, 강일동 155-8, 강일동 138-10
3. 환경정비구역의 현황

구분	연계 하수처리장	지역	자연부락 (법정동)	면적(㎡)	총 호수	인구수
금회 신청	탄천물재생센터	서울시 강동구	가래여울마을 (강일동)	6,932	6	2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78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등록 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 등록 직인 (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구분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등록일자
등록	신성장산업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7. 9. 21.
등록	신성장산업과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7. 9. 2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83호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본 사업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 치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2.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 간

3. 열람장소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 02-2133-8331, 8332) 및 각 구청 도시계획과
(※ 중랑구, 도봉구,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노원구, 은평구 해당)

4.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을 아래에 게재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5. 주민설명회 일시/장소

- 일시 : 2017.10.11.(수) 10시
- 장소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서소문별관 2동 3층 회의실)

6. 의견제출 :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 제출

구 고 시

◆ 용산구고시 제2017-121호

도시계획시설(철도:용산민자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2000-362호(2001.1.6.)로 실시계획인가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번지 외 3필지 상 용산민자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한강로 3가 40-999번지 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 칭 : 용산민자역사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철도) 면적 : 126,930.74㎡

○ 대지면적 : 118,138.5㎡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면적 적용)

명 칭	시설규모(㎡)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용산 민자역사 사업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건축면적	59,277.95	감) 20.04	59,257.91	• 증축-1F~4F, 6F~8F -판매, 업무, 문화및집회, 운동시설, 공용 등
	연면적	341,753.89	감) 558.55	341,195.34	• 용도변경 -6F 판매→업무, 문화및집회, 운동시설, 공용
	높이	B3F~10F/ 63.1m	-	B3F~10F/ 63.1m	-7F 문화및집회→판매 -8F 판매→업무, 문화및집회→판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현대아이파크몰 대표이사 양창훈,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번지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 착공신고일

바. 준공예정일 : 착공신고일로부터 21개월

사. 자원조달계획 : 본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사업시행자가 자체조달

◆ 강북구고시 제2017-1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7-87호(2007.12.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4-59호(2014.3.27)로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4-114호(2014.6.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제2015-24호(2015. 2.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제2015-71호(2015. 4. 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제2015-242호(2015.10.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제2016-66호(2016. 4.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제2017-1033호(2017. 9.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빨래골길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8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 개요

구분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비고
당초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강북구 삼양로77길 95 ~ 삼양로77길 16	폭 11~12m 연장 582m	강북구고시 제87호 (2007.12.20)	
변경		강북구 삼양로77길 95 ~ 삼양로77길 16	폭 12m 연장 582m		편입물건 일부변경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있음)

- 기정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 변경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추가구간에 대한 명세로 당초구간에 대한 명세는 변동 없음)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관리과(☎901-5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수유동 486-1506	대	6	6	강북구 삼양로77길 73 (수유동)	김동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기 정>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지분	주	성명	
1	수유동 486-251	1층	철근콘크리트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9길 35-26(수유동)	구원희					
		2층		12							
		3층		12							
		4층		11							
		지층		13							
		4층베란다		1							
		옥탑		4							
		건물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변경>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지분	주 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수유동 486-251	1층	철근콘크리트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9길 35-26 (수유동)	구원희					현행 평면 투영
		2층		20							
		3층		20							
		4층		17							
		지층		20							
		4층베란다		2							
		옥탑		5							
		지층		11							
2	수유동 486-340	1층	철근콘크리트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73 (수유동)	김동창					물건추 가
		2층		12							
		3층		12							
		옥탑		3							
		지층		11							

발래골길 도로확장공사



◆ 동작구고시 제2017-7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성명 및 주소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조사인 외 2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36길4)

3. 사업시행자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나. 면적 및 규모

구분	규 모			대지면적 (㎡)	건축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조경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층수 (지상/지하)	동	세대수							
아파트	20/5	12	885	38,430	7,369.16	19.18	223.02	13,509.89	471,910,805	2020.04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 2020. 4. 30.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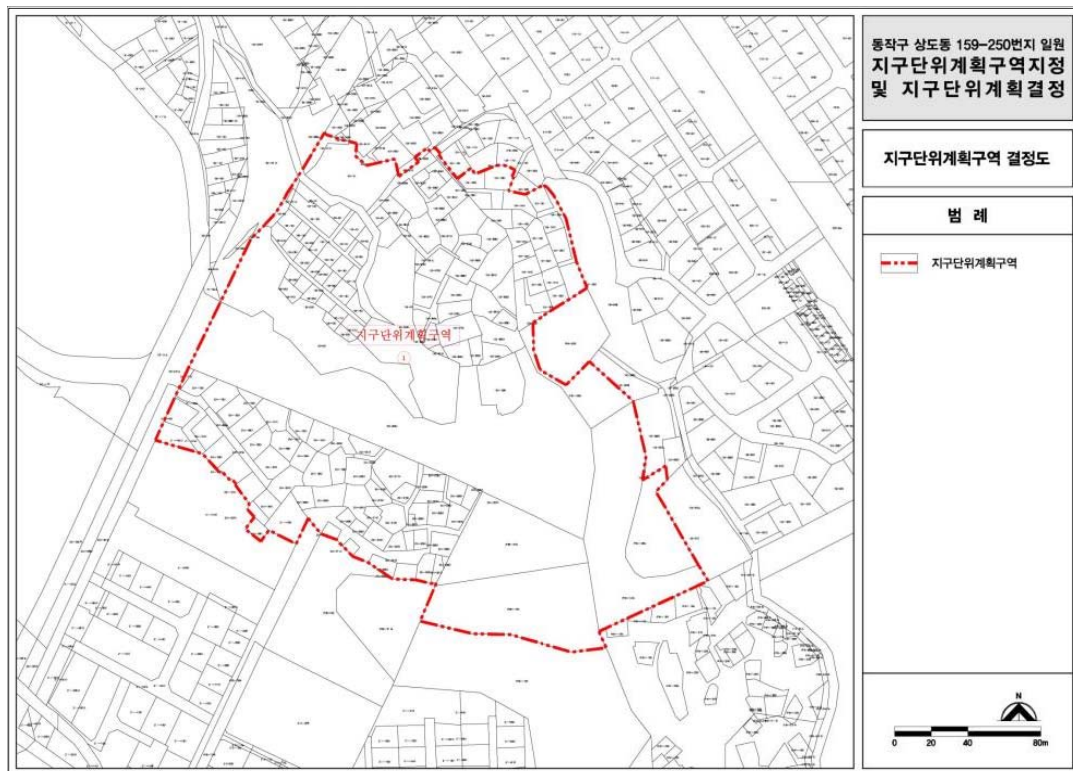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	증) 47,105	47,105	

※ 측량성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①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47,105	토지이용 및 제반환경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및 미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나)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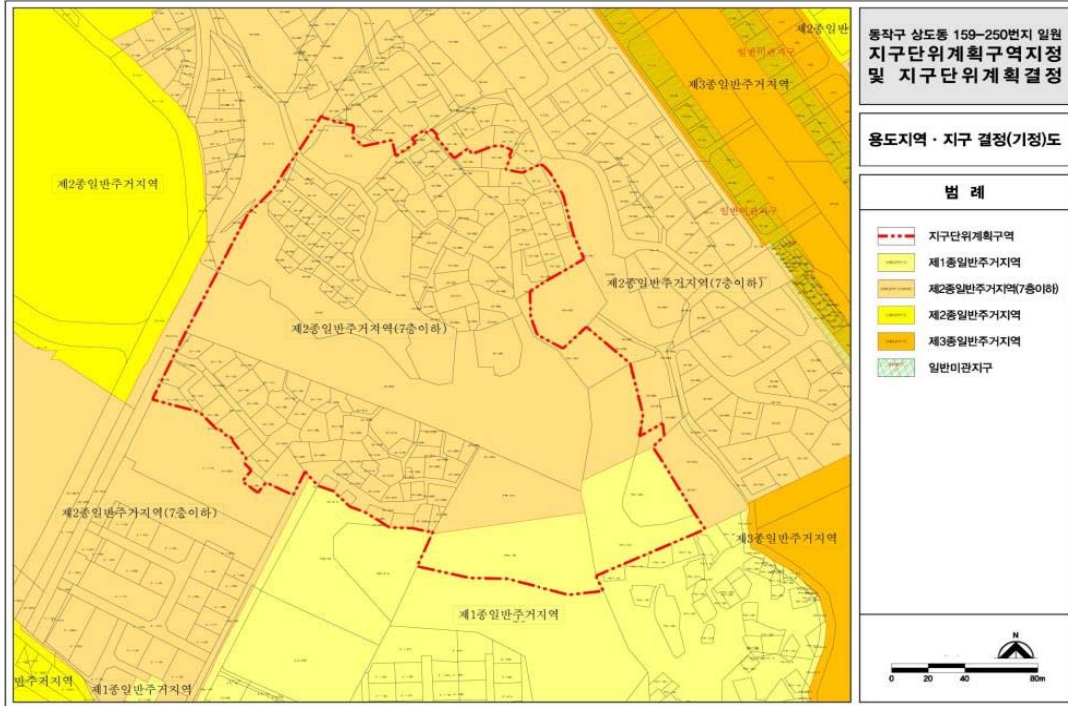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7,105	-	47,105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882	감) 1,136	4,746	10.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1,223	감) 41,22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2,359	42,359	89.9	참표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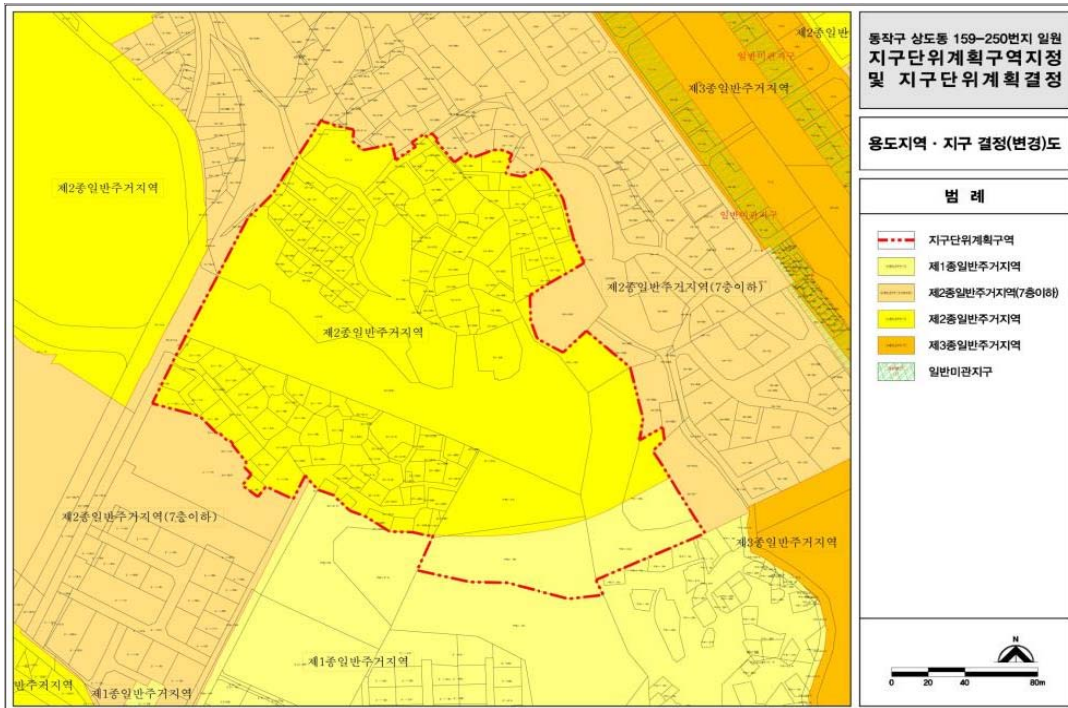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136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 지역 변경
-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41,223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	781	15,902	-	-	-	1	71	589	1	710	15,313
중로	1	710	15,313	-	-	-	-	-	-	1	710	15,313
소로	1	71	589	-	-	-	1	71	589	-	-	-

※ 측량성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5	12~30	보조 간선	710	상도동 210-455	상도동 32-11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3	35	12~35	보조 간선	710	상도동 210-455	상도동 32-11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2	79	8	국지	71	상도동 159-392	상도동 159-441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35	중로3-35	- 도로 확폭 - 폭 : 12~30m → 12~35m - 연장 : 구역내 일부구간(85m)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일부구간 도로 확폭
-	소로2-79	- 도로 신설 - 폭 : 8m - 연장 : 71m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㉔	상도 근린공원	근린공원	상도동 산65-116번지 일원	359,342.8	증) 1,061	360,403.8 (4,746)		-
신 설	①	-	소공원	상도동 204-192번지 일원	-	증) 1,390	1,3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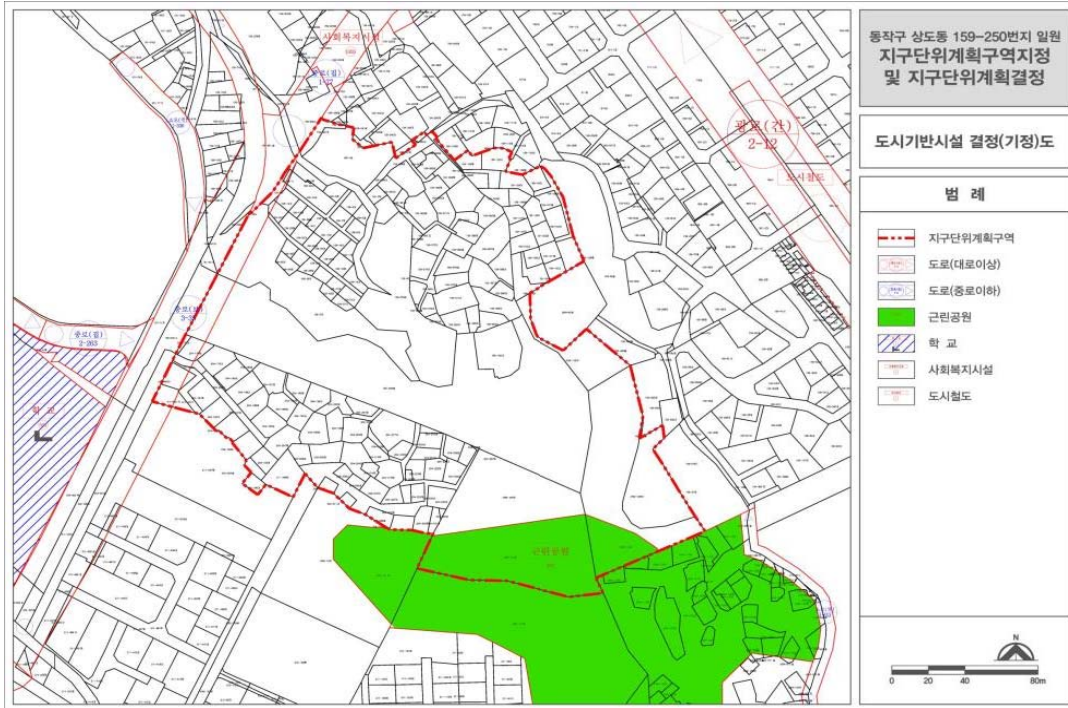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는 구역내 면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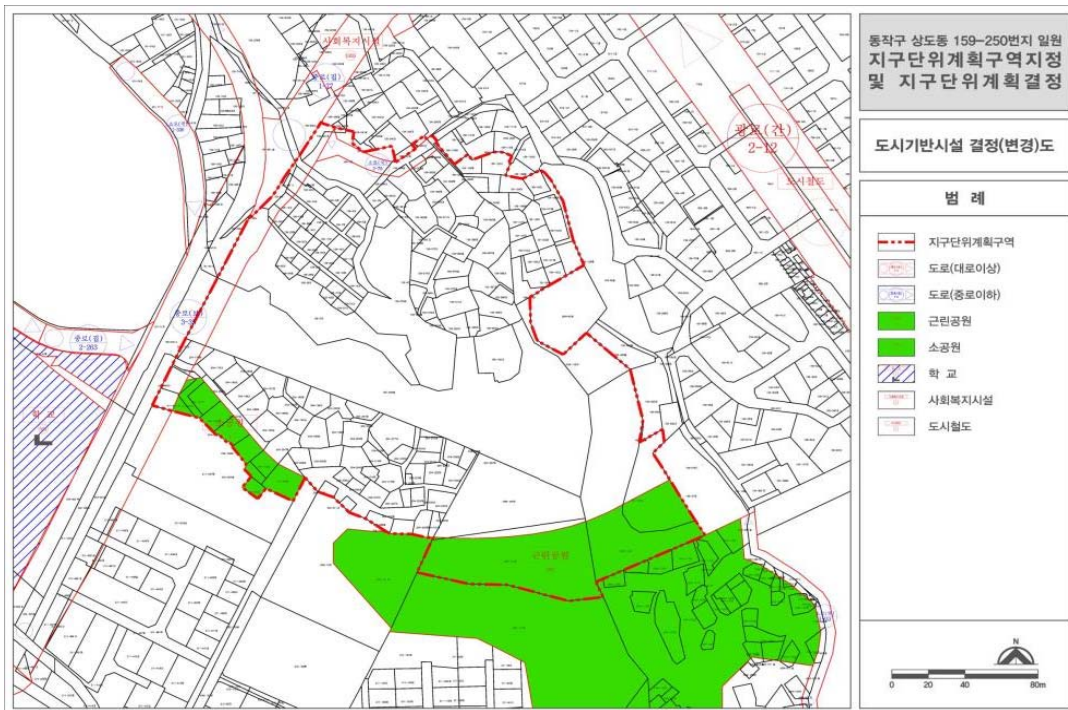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㉔	상도 근린공원	- 공원 면적 증가 - 면적 : 359,342.8㎡ → 360,403.8㎡	- 지역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 - 도모를 위한 근린공원 확보
①	-	- 소공원 신설 - 면적 : 1,390㎡	- 지역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 - 도모를 위한 소공원 확보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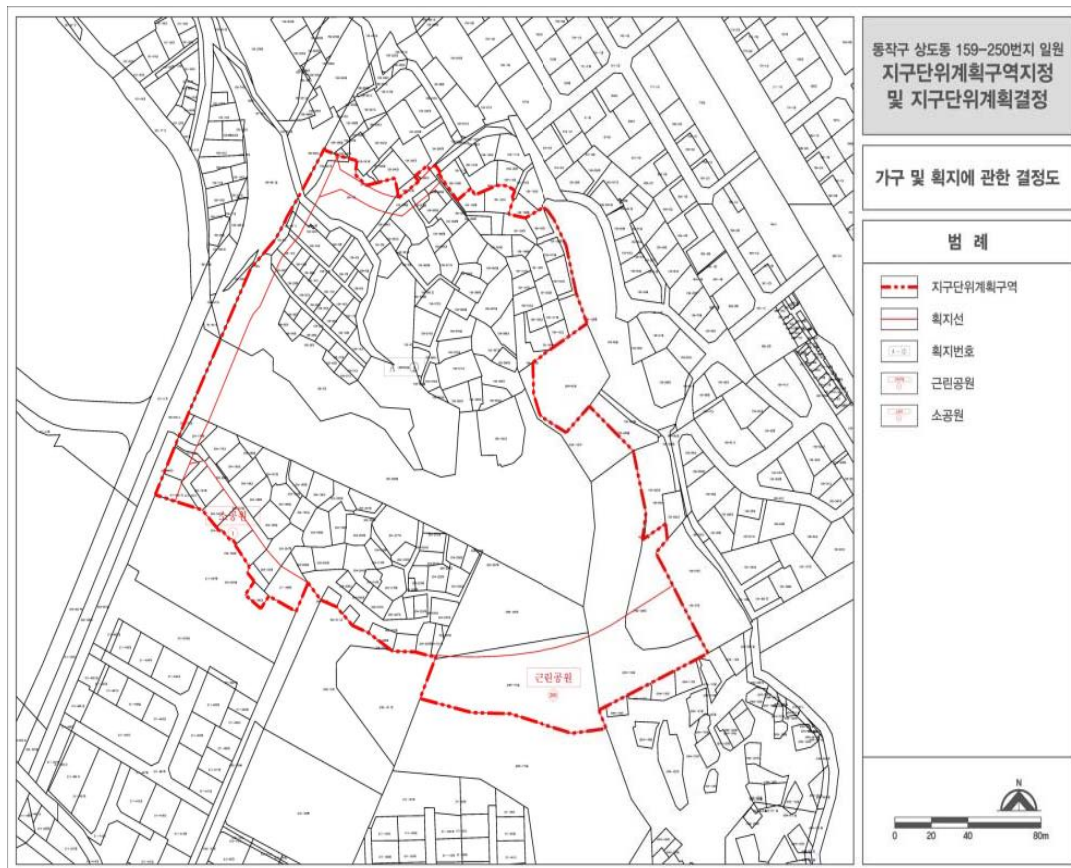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변경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획지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47,105	
획지계획	소계	－	38,430	
	획지①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	38,430	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	소계	－	8,675	
	도로	상도동 159-1번지 일대	2,539	중로3-35, 소로2-79
	공원	상도동 산65-116번지 일대	6,136	상도근린공원(일부), 소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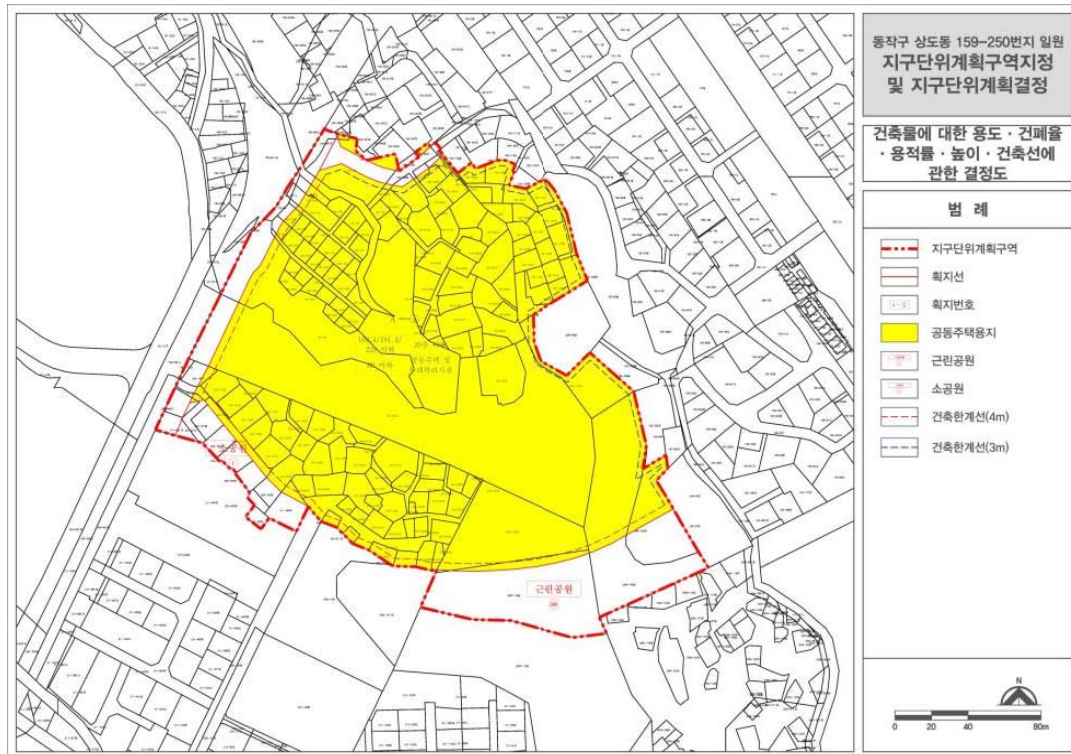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①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산출식] • 기준={ $(150 \times 1,141 \text{ m}^2) + (170 \times 37,289 \text{ m}^2)$ }/38,430 m^2 =169.40% • 허용=169.4%+12%(무량판구조 7%, 친환경최우수등급 3%, 신재생 에너지 2%) = 181.40% • 상한=181.4%+(169.4% $\times$ 1.3 $\times$ 0.2257 $\times$ 0.9384)=228.04% ※a=8,675 m^2 /38,430 m^2 =0.2257, C=158.97/169.40=0.9384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 ={{ $(150 \times 4,741 \text{ m}^2) + (170 \times 3,929 \text{ m}^2)$ }/8,675 m^2 =158.97%
		기준	
		허용	
		상한	
		높이	• 최고층수 20층 이하
		건축선	• 중로3-35호선 및 근린공원변 : 4m • 소로2-79호선 및 인접대지변 : 3m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도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3-35호선변 (양녕로변)	• 중로 3-35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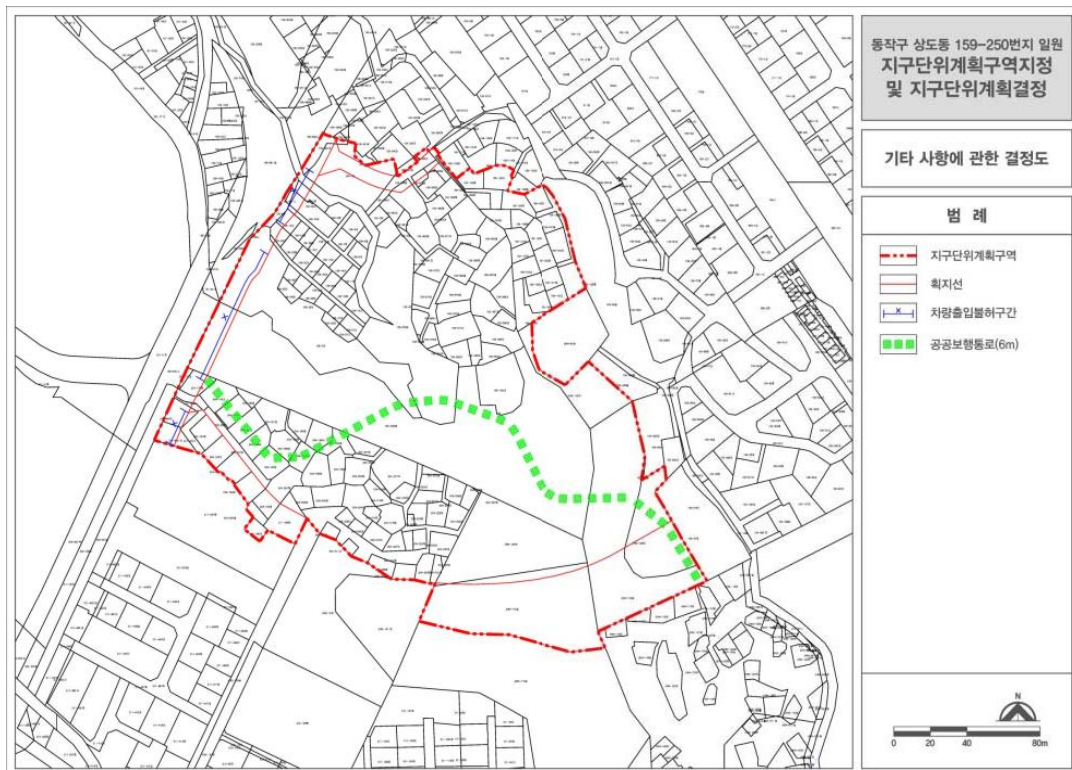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상도근린공원 ~ 중로3-35호선변(양녕로변)	• 공공보행통로 지정 : 폭원 6m	

다) 공공시설 부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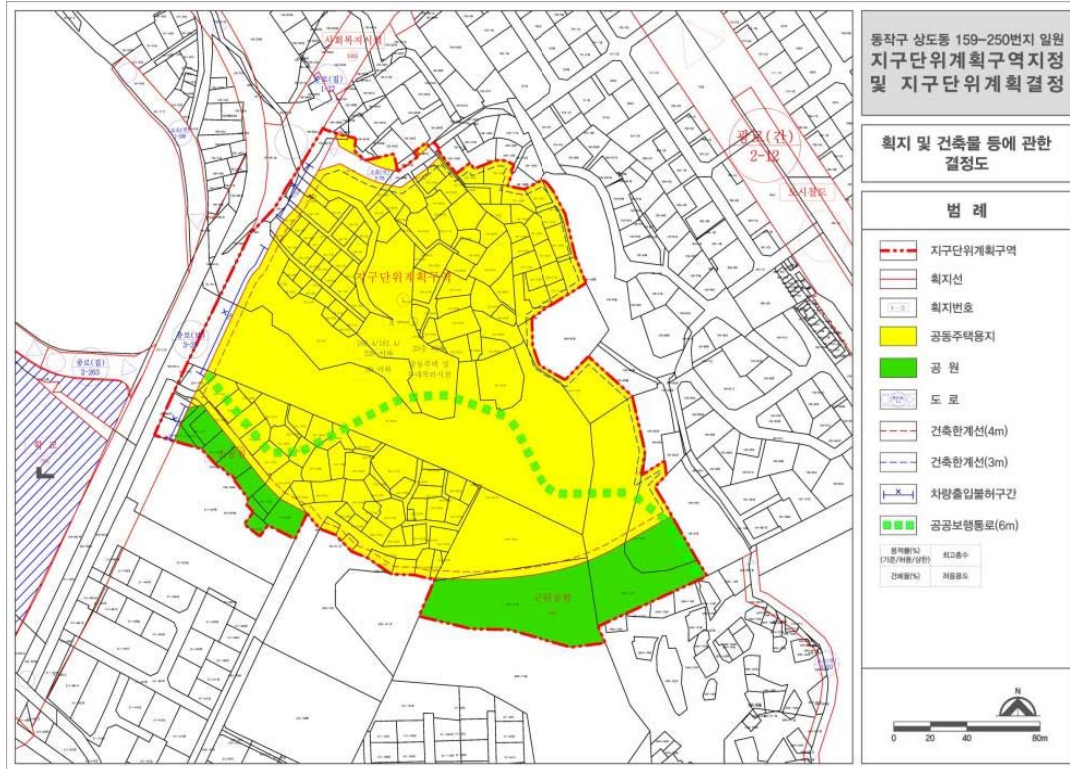
구분	면적(㎡)	순부담률(%)	비고
공 원	6,136	13.0	
도 로	2,539	5.4	
소 계	8,675	18.4	

※ 측량성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 종합 결정도



6. 기타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주택과(☎ 820-138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17-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동작구 상도동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중(보)로3-35호선 외 1개 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8일
동작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보)로 3-35호선 - 동작구 상도동 159-1번지 일원
 소(국)로 2-79호선 - 동작구 상도동 159-392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다. 사업의 명칭 : 동작구 상도동 도시계획도로(중(보)로3-35호선 외 1개노선) 개설공사
- 라. 사업 시행자
- 성 명 :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외 2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36길4(상도동)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0. 04. 30
- 바. 사업시행지의 규모

시설명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도 로	중로	3	35	12~35	보조간선도로	710	상도동 210-455	상도동 32-11	
	소로	2	79	8	국지도로	71	상도동 159-392	상도동 159-441	

※()구역 내 연장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아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 편입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도로	비고
1	상도동	157-50	도	2,419	42	서울특별시 동작구	-	중(보)3-35	
2	상도동	158-1	대	100	42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3	상도동	158-10	대	241	47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4	상도동	158-11	도	163	12	기획재정부	-	중(보)3-35	
5	상도동	158-12	대	99	45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6	상도동	158-24	대	73	33	태려건설산업(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2동 158-24	중(보)3-35	
7	상도동	158-25	도	159	6	기획재정부	-	중(보)3-35	
8	상도동	159-1	대	976	429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소(국)2-79	
9	상도동	159-5	대	2,594	509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도로	비고
10	상도동	159-8	도	96	96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11	상도동	159-123	대	116	18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소(국)2-79	
12	상도동	159-156	대	109	5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소(국)2-79	
13	상도동	159-250	대	9,366	429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14	상도동	159-258	도	241	146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소(국)2-79	
15	상도동	159-355	대	61	20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소(국)2-79	
16	상도동	159-357	대	51	30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소(국)2-79	
17	상도동	159-358	대	239	38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소(국)2-79	
18	상도동	159-441	대	145	130	서울특별시	-	중(보)3-35	
19	상도동	159-487	도	19	19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20	상도동	204-177	대	22	22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21	상도동	204-178	대	155	117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22	상도동	211-449	대	169	141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23	상도동	211-450	도	78	45	서울특별시 동작구	-	중(보)3-35	
24	상도동	211-474	도	120	1	서울특별시 동작구	-	중(보)3-35	
25	상도동	211-482	대	178	117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계				17,989	2,539				

◆ 서초구고시 제2017-122호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 2005-91호(2005.11.0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160-27번지 일대의 서리풀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23-16 등 5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서리풀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면적 : (당초)7,443㎡ (변경)5,535㎡
 - 나) 내용 : 토지보상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당초	1	서초동 산160-27	임야	16,328	1,39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14,936/16,328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5길 *(누하동)	최정*	621.29/16,328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9, **동 ***호(반포동, 반포아파트)	김신*	591.79/16,328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77, ****동 ****호 (망월동, 미사강변도시12단지)	김윤*	178.92/16,328	은성*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70길 43 ***동 ****호(청담동, 청담2차 이-편한세상)	근저당권 설정	
변경	1	서초동 산160-27	임야	16,328	1,170							
당초	3	반포동 산85-11	임야	2,245	910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60031, 4117 Bitternut Lane ATP *** Gurnee	이동*	2,245/2,245				
변경	3	반포동 산85-47	임야	910	765							
당초	4	반포동 산89	임야	3,140	1,160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동 ***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남윤*	3,140/3,140				
변경	4	반포동 산89-3	임야	1,160	976							
당초	5	방배동 산23-34	임야	5,966	2,060	서울 성동구 마조로15가길 11,***호(마장동, 마장동해맑은아파트)	인영*	132.6/5,966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259번길 19-7(덕풍동)	손상*	132.6/5,96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93, ****동 ****호 (석수동, 석수e편한세상아파트)	최승*	132.6/5,96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1길 35-5(봉천동)	신철*	132.6/5,9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1동 ***호(메탄동, 동남아파트)	이낙*	132.6/5,966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	윤상*	132.6/5,966				
						서울 강동구 상암로11, ****동 ****호(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전종*	132.6/5,96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 (우이동)	고종*	132.6/5,966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종 류및내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당초 5	방배동 산23-34	임야	5,966	2,060	서울시 중랑구 상봉로 131, *동 ***호(상봉동, 상봉 듀로트리스)	이공*	132.6/5,966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71, ***동 ***호 (진현동, 청구아파트)	황선*	132.6/5,96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길 6-83 *동 ***호 (도봉동, 삼환도봉아파트)	이*	132.6/5,966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05, *동 ***호(오금동, 상아아파트)	김희*	132.6/5,966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충정대로 1021번길 *-*	최화*	132.5/5,966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50, ***동 ***호 (용현동, 건영아파트)	권혁*	132.5/5,966	이천*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육사로395번길 ***-***	근저당권 설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80, ***호 (만촌동, 담터힐즈)	정환*	132.5/5,96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65-13, ***동 ***호 (암사동, 암사제-관한세상)	연충*	169.4/5,966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95-6, ***호 (후평동)	박동*	169.4/5,966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285번길 47, ***동 ***호 (중동, 미리내마을)	민경*	169.4/5,966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51, ***동 ***호 (면일동, 고덕주공아파트)	최종*	169.4/5,9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263번길 24, ***동 ***호 (분당동, 장안타운)	이용*	169.4/5,96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동 ***호 (잠실동, 리센츠)	이재*	169.4/5,96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81번길 **	김차*	169.4/5,96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145-1, ***호 (안양동)	권명*	191.5/5,9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01, ***동 ***호(아람동, 장미마을)	김원*	191.5/5,966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종류 및내용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당초	5	방배동 산23-34	임야	5,966	2,060	경기도 의정부시 호안로 256, ***동 ***호 (호원동, 신일유도빌아파트)	백규*	132.6/5,966					
						서초구 방배동 964-24(42/6) 우림가든빌라 ***호	고무*	132.6/5,96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세천년로 27, ***동 ***호 (신길동, 녹원마을새천년그린빌)	성금*	191.5/5,966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동 ***호 (반포동, 반포자아파트)	박노*	169.4/5,966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 28, 112동 ***호(도화동, 마포삼성아파트)	이철*	132.6/5,966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134, ***동 ***호(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남영*	132.6/5,966					
						서울시 도봉구 창동 45(43/2) 삼성아파트 ***동 ***호	김동*	132.5/5,966					
						경기도 의왕시 새롭길 21, ***동 ***호 (포일동, 인덕원대우아파트 푸른마을)	이옥*	191.5/5,966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29, *동 ***호 (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한상*	169.4/11,932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47길 57, ***호(암사동, 강동해미리)	김태*	169.4/11,9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 ***동 ***호 (신길동, 모라메경남아너스빌)	이순*	191.5/5,966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520번길 27, *층동 ***호(모아주택)	윤원*	169.4/5,966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3, ***동 ***호(원문동, 주공아파트)	김명*	169.4/5,966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93, ***동 ***호(시흥동, 벽산아파트)	김철*	191.5/5,966					
변경	5	방배동 산23-37	임야	2,060	1,732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8길 12, ***동 ***호(문정동, 건영아파트)	이선*	663/29,83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동 ***호 (서초동, 삼풍아파트)	이지*	169.4/5,966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적	면적(㎡)		성명	지분	주소	
당초	5	방배동 산23-16	임야	1,921	1,921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5길 ***(홍제동)	박재*	1/4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15길 99, ***동 ****호(동소문동7가, 한신휴아파트)	현옥*	1/4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동 ****호(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한세*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125, ****동 ****호(원흥동, 삼송마을15단지 계룡리슈빌)	노성*	1/16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9길 9, ***호(불당동)	최영*	1/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51, ***동 ***호(신방동, 천안신방푸르지오)	김혜*	1/16		
변경	5	방배동 산23-16	임야	1,921	892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3, ***동 ****호(서초동, 유원서초아파트)	박성*	1/16		

◆ 서초구고시 제2017-124호

도시계획시설(말죽거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16호(2005.07.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말죽거리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변경 없음)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57-35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조성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내용
 - 가) 면적 : 2,290㎡
 - 나) 내용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변경 없음)
 - ※ 변경 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번호
 - 당 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8호(2017.07.13)
 - 변 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16호(2005.07.21)

붙 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1부. 끝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2,290	2,290							
1	양재동 산57-35	임야	2,290	2,29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14 1층(양재동, 옥천빌딩)	주식회사 호주건설		케이비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수탁자	

구 공 고

◆ 중랑구공고 제2017-8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04-15호(2004.02.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17-18호(2017.03.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망우동 87-40 도로개설공사」와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11-28호(2011.08.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11-31호(2011.09.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신내 3택지 지구외도로 개설공사(도로확장 및 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중랑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179 (신내동 662)

다.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망우동 87-40 도로개설공사	· 망우동 87-40	면적 55㎡	2017.03.16 ~ 2017.06.29
신내3택지 지구외 도로 개설공사 (도로확장 및 배수시설공사)	· 신내동 57-2 ~ 117간	폭 : 12m→19~23m 연장 : 180m	2011.12.01 ~ 2013.10.30

라. 붙임 : 위치도 1부.

【 위치도 】



◆ 도봉구공고 제2017-984호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도봉구공고 제2017-388호(2017.04.06)호로 열람공고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학동 713-14번지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2017.09.13. 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도 봉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02-2091-3564)

다.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의 출입 불허
	주차 출입구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주차출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 표시된 지역에 한하여 허용(5개소)
변 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의 출입 불허 (방학동713-14 차량출입(6m) 추가 허용)
	주차 출입구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주차출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 표시된 지역에 한하여 허용(6개소) - 방학동 713-14 전면 주차출입구(6m) 신설

※ 금회 신설되는 방학동 713-14 전면 주차출입구는 후면 이면도로(소로3-2) 개설시까지 설치·사용토록 조건부 허용

○ 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 설	방학동 713-14 주차출입구 신설	이면도로 미개설에 따른 주차출입구 신설

※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없음

라.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로 같음)

◆ 노원구공고 제2017-79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사도법」 제13조에 따라 사도를 폐지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도 폐지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노 원 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하계동 180-36 외 5필지 사도폐지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토지주의 사도폐지 신청서 접수
3. 처분대상

위치	면적(㎡)	허가일	사도허가 현황	비고
하계동 180-36	77	2003.5.12	B : 4m, L : 57m (면적 : 260㎡)	
하계동 180-44	33			
하계동 180-2	84			
하계동 180-37	14			
하계동 180-11	8			
하계동 180-33	44			

4. 청문일자 및 장소

가) 청문일자 : 2017. 10. 25(수) 15시

나) 청문장소 : 노원구청 3층 도시관리과

5. 공고기간 : 2017. 9. 28. ~ 10. 12.

6. 유의사항 : 청문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문을 마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도 폐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도개설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도시관리과(02-2116-3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공고 제2017-802호

도시계획시설(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7-100호(2017.9.21.)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노원구 상계동 1035-3 필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 내용은 노원구청 체육청소년과에 비치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35-3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다. 사업의 명칭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사업
-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사업

라. 사업의 내용

- 면 적 : 934㎡
- 사업규모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4㎡(연면적 1,327㎡, 지하 1층, 지상 4층)
 - 재활용홍보전시관 410㎡(연면적 675㎡, 지상3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로블임

사. 열람기간 : 공고일(서울시보, 노원구보)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 체육청소년과 (☎ 02-2116-3188), 자원순환과 (☎ 02-2116-3810)

자.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노원구보 게재

카.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관련도서는 노원구청 체육청소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상계동1035-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관리내용	
1	노원구 상계동 1035-3	전	934	934	대	홍경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2803, 104-2201(도곡동, 삼성래미안(아))					사유지
이 하 여 백 -												

물 건 조 서

■ 사업명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 (상계동1035-3)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종 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면적㎡)	권리의 종류와내용	
1	상계동1035-3	계 근대	철재	1식	계 근대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토목과 물건조서 반영됨
2	상계동1035-3	컨테이너	철재	15㎡	사무실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토목과 물건조서 반영됨
3	상계동1035-3	컨테이너 박스지붕	철재	1식	사무실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4	상계동1035-3	컨테이너박스 계 단	철재	1식	사무실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5	상계동1035-3	재활용품선별 컨베이어벨트	철재	1식	선별기계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6	상계동1035-3	재활용품 분류칸막이	철재	1식	분류칸막이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7	상계동1035-3	경계담	철재	1식	경계담	임경순 (소백자원)	상계동 963-5				
8	상계동1035-3	경계담	철재	1식	경계담	이만복 (준희자원)	상계동 963-5				
9	상계동1035-3	재활용품 분류칸막이	철재	1식	분류칸막이	이만복 (준희자원)	상계동 963-5				토목과 물건조서 반영됨

◆ 노원구공고 제2017-80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35-3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 인가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7. 4. ~ 2019. 11. 31.(32개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35-3	○면적 : 524㎡ ○내용 : 사회복지시설	노원구청장(김성환)/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사업기간(예정) : 2017. 4. ~ 2019. 7. 31.(28개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35-3	○면적 : 410㎡ ○내용 : 공공청사	노원구청장(김성환)/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	노원구청 체육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	2017.09.28. ~ 2017.10.13.(15일간)
재활용홍보전시관 건립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2017.09.28. ~ 2017.10.13.(15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7. 09. 28. ~ 2017. 10. 13.(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체육청소년과(☎02-2116-3188), 자원순환과(☎02-2116-38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청고 제2017-12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82호(2008.12.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4-767호(2014.7.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 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4-90호(2014.8.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천호2준치관리구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지적분할 완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천호2준치구역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완료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강 동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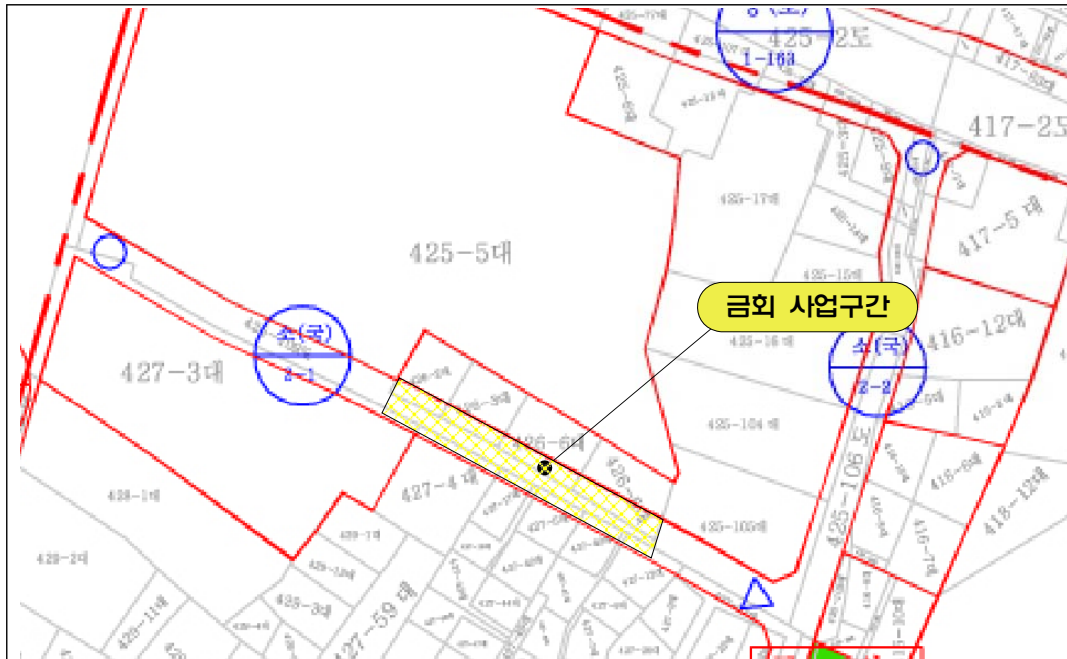
사 업 명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지	사업시행자	사업개요	사업기간
천호2준치구역내 도로개설공사	강동구 고시 제2014-90호 (2014.8.21)	천호동426-2 ~ 천호동426-6	강동구청장	도로확장 (B=6~8m, L=92m)	2017. 6. 5. ~ 2017. 9. 12.

위 치 도

□ 천호2준치구역내 도로개설공사



□ 상세 위치도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9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한화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시계내한강 (선유도~여의도)	선박 22척 (기선 3척, 부선 19척)	2017 서울세계 불꽃축제	2017.09.22. ~ 2017.10.08.	2017. 09.20.

사업소공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96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마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292-1, 98-1, 58-3, 93-1, 100, 100-1, 308번지(총 7필지)
 - 면 적 : 영구 222㎡, 일시 4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상수빗물펌프장 토출관로 설치
 - 내 역 :
 - 토출관로(D=1,200mm) 및 자연유출암거(D=1,000mm*2열) L=60.74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7.09.21.~2022.09.20.(허가일로부터 2018.12.31.까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97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1번지

- 면 적 : 1,900m²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설치
 - 내 역 :
 - 컨테이너 18개소 설치(1개소당 A=14.4m²)
 - 푸드트럭 6대
-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7.09.21.~2020.09.20.(허가일로부터 3개월, 2017.12.20.까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98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148-2, 148-3, 136, 136-1번지 (총 4필지)
 - 면 적 : 영구 424m², 일시 602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신마포나들목 설치
 - 내 역 :
 - 나들목(L=51.5m, B=5.0m, H=3.5m) 1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7.09.21.~2022.09.20.(허가일로부터 27개월, 2019.12.20.까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99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파기지국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78 순창빌딩 5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37(당산동 95-1번지)
 - 면 적 : 영구 37.09㎡, 일시 46.9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 내 역 :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1개소, 전기·광관로 207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7.09.21.~2022.09.20.(허가일로부터 1개월, 2017.10.20.까지)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